서울大學校

圖書館報

제 2 권

Bulleti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ol. 2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64. 12

여 백

目　　次

卷　頭　辭 …… 1

Ⅰ　鵝溪遺稿 小考 …… 2

Ⅱ　奎章閣 略史 …… 6

Ⅲ　法律參考圖書 解題(法科大學圖書館所藏分)……29

Ⅳ　中央圖書館 主要業績 槪要(63.10～64.10) ……37

Ⅴ　圖書館 現況 ……39

1. 施設現況……40

2. 圖書館資料의 構成……42

가. 藏書一覽表 ……42

나. 非圖書資料一覽表 ……46

3. 圖書館資料의 蒐集狀況 ……47

가. 圖書交換現況 ……47

4. 圖書館利用統計表……48

5. 職員現況……52

Ⅵ　各大學 圖書館 案內 ……53

1. 行政大學院……53

2. 文理科大學……55

3. 師範大學……56

4. 音樂大學……57

Ⅶ　마이크로複寫施設 利用案內 ……58

Ⅷ　主要日誌……60

卷 頭 辭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長 金 桂 淑

1964年을 도리켜보면 第三共和國의 새로운 出發과 함께 多事多難한 가운데서도 서울大學校의 圖書館事業은 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 各大學圖書館의 整理와 擴充에 있어서 飛躍的前進은 없었으나 꾸준하고도 堅實하게 基礎的이며 全體的인 計劃과 整備를 通하여 가까운 앞날의 巨步的인 發展의 基盤을 構築하고 있읍니다.

藏書數에 있어서는 지난 8月 末現在로서 全 서울大學校의 登錄된 圖書만 하여도 81萬卷을 넘었으며 이 巨大한 研究資料를 全體的으로 圓滑하고도 有効하게 活用토록 하기위하여 「서울大學校 綜合目錄」 事業이라고 하는 거창한 事業도 지난 1學期에서부터 그 準備에 着手하여 現在는 그 目錄作成事業이 進行되고 있읍니다. 서울大學校가 綜合大學으로서 그 完全한 機能을 發揮할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優先的인 基盤의 하나로서의 圖書館의 全體的 計劃은 始作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綜合的事業을 完遂하기 위하여서는 于先 圖書館報를 發行함으로써 圓滑한 콤뮤니케이션의 使命을 다하려고 하였으며 이번에 그 제 2號가 나오게된 것입니다. 어려운 財政的인 隘路에도 不拘하고 1964年의 서울大學校 圖書館事業의 總決算을 널리 紹介할 수 있게 된 것을 서울大學校 全圖書館職員과 함께 그것을 支援하여주신 敎授들에게 感謝를 드려마지아니 합니다.

特히 中央圖書館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필름撮影機」와 함께 필름複寫機의 設置입니다. 이 機械設置로 因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貴重한 文獻의 廣汎한 利用은 勿論이요 어떠한 文獻的 研究資料를 莫論하고 對外的으로도 奉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最新의 「콤뮤니케이션 메디아」의 施設로서 이 貧弱한 學界에 널리 貢獻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圖書와 施設을 어떻게 가장 有効하고 價値있게 活用할 것인가 하는 다음 問題가 남아 있읍니다. 이와같은 커다란 問題를 앞에 두고 1965年에는 보다더 커다란 成果가 있기를 바라면서 第二號의 發刊을 祝賀하는 바입니다.

Ⅰ 鵝溪遺稿 小考

車 柱 環

1963年 7月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는 1年半 동안 筆者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收藏된 奎章閣圖書 및 古圖書에 들어있는 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韓國歷代文集의 基礎的인 硏究에 종사해 왔다. 基礎調査를 土臺로 하여 整理 對照한 結果 古圖書, 昌慶苑內 藏書閣 및 國立圖書館에 들어 있지 않고 奎章閣圖書에만 들어 있는 韓國文集이 310種이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鵝溪遺稿는 그 가운데의 하나다.

鵝溪遺稿는 宣祖朝에 두 차례나 領議政을 지낸 李山海(1539~1609)의 詩文集으로 奎章閣圖書에는 4761, 5322 二種이 있다. 이 二種의 鵝溪遺稿는 同版本으로 6卷 3冊(第1冊 91葉, 第2冊 99葉, 第3冊 102葉), 木版本, 半丁 9行, 1行 20字, 注雙行, 4761은 完本으로 弘齋·震章·侍講院·春坊藏·帝室圖書之章 등 多數의 藏書印이 찍혀 있고, 5322는 第3冊 卷6 第19, 48~53葉 都合 7葉이 없고 그 자리에 白紙가 挿入되어 있으며 弘文館·帝室圖書之章이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다. 藏書印으로 보아 前者는 본래 世子敎育을 擔當하던 侍講院에서 使用하던 것이었고 後者는 弘文館에서 閱覽하던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後者만 保存되었으면 鵝溪遺稿의 完本은 남아 있지 못하게 될번 하였다

本書의 編次는 一般 韓國文集의 文類別에 따른 그것 과는 迥異하다. 卷1~3은 箕城錄이라는 大題下에 詩와 文章이 들어 있고 卷4 第1行에는 後集이라 注記되어 있으며 同卷에는 鍾峴錄, 乞歸錄, 雙門錄, 街隱錄, 奉使錄, 東門錄, 南郭錄, 省墓錄, 北方錄, 鷗浦錄, 柿田錄, 鷗浦後錄, 壠上錄, 露梁錄 都合 14錄이 들어 있고 거기에는 다 詩가 收錄되어 있다. 卷5.6은 疏類, 箚類, 跋類(以上 卷5), 記類, 序類, 銘類, 誌類, 祭文, 賦類(以上 卷6)의 標題로 文類別에 依해 編次되어 있다.

箕城錄自跋 以外에는 序跋·附錄 등이 全無하여 成書의 緣起를 알아볼 線

索을 찾아보기 힘들다. 詩 2卷, 文章 1卷으로 되어 있는 箕城錄에도 詩 2卷 끝에 自跋이 붙어 있다. 이 自跋은 宣祖 27年(1594)에 山海가 手撰한 것으로 적어도 箕城錄의 詩 2卷만은 山海가 自編한 것이 分明하다. 箕城錄은 壬辰倭亂 後에 山海가 政治에서 失脚하여 謫居한 3年 동안의 詩文이다. 鍾峴錄 以下 14錄은 山海의 生涯의 特定한 時期를 區劃하여 그 時期에 製作된 詩를 모아 놓은 것들이다. 그중에는 불과 1·2首의 詩를 收錄한 데 그친 것도 있다. 推測하건대 이 14錄도, 箕城錄의 詩文을 編次한 후에 掇拾한 諸篇을 山海가 直接 時期別로 區劃 編次한 것일게다. 卷5·6에 收錄된 跋箚를 비롯한 諸篇은 山海 死後 그의 子孫이 文類別로 整理하여 追錄한 것으로 보인다.

箕城錄의 詩는 放逐中의 孤臣의 戀君之情, 謫居中에 前後해서 妻·子·女를 잃은 괴로움, 謫所의 風情 등을 吟詠한 것으로 惻愴·凄悲한 情이 流露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達觀이라든가 諦念이라든가 하는 것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서 領議政까지 지낸 사람의 老境의 詩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山海는 達村記에서 자기의 謫居生活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屋無庭, 纔三四間, 蓋以瓦茅木皮, 而木皮居其半. 炊爨則烟常滿室, 雨則簑笠而坐. 主人爲余作草亭於西岡之上, 晝則坐臥眠食, 未嘗不於是焉. 興至則烏巾笻竹, 俳徊峯嶺之頂, 時或短童羸馬, 往來猶詩於棠渚之間, 不知此身之爲遠客也.

이 達村記를 비롯한 20篇에 達하는 遊記는 嶺東의 寒村을 中心으로한 自然山水를 遊賞한 글들인데, 年老者의 글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文章에 生氣가 動盪한다. 梧谷蓮塘記에서 그는 蓮꽃의 形容을 描寫하고 萎折하는 蓮꽃에 自身을 比喩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 余則非遯世者也, 乃見棄於時者也. 雖無馨德之可觀, 而其終之零落萎折, 則頗相類. 故余誠感而悲之.

望洋亭記 前半에는 山海의 獨特한 文章觀이 披瀝되어 있어 그의 文章을 理解하는데 한 도움이 된다. 文章도 좋고 하여 그 一部를 節錄하여 두기로 한다.

……及謫嶺東，過洛山而觀日出，過臨瀛而望鏡浦寒松之勝，過召公臺而望蔚陵之縹緲，中心已自喜幸，而及登望洋亭，見天容海色之蒼然淵然，而其大無外，其濶無涯，其深無極，然後始有以盡平生之壯觀，而浩浩乎胷中若與曩時異矣．百川滔滔，日夜不止，則知氣之必養其本原，而爲文不可不混厚深遠．三光繞天，出沒無停，則知氣之不使有間斷，而爲文不可不純實猛健．蛟龍鯨鯢，噴薄紛拏，則知氣之務要雄勇，而爲文不可不動盪發越．蜃樓鰲嶼，隱現明滅，則知氣之務要沈着，而爲文可不奇古幽眇．風濤怒號，振撼坤軸，銀山玉峯，素車白馬，橫馳逆走於雪花氷雹之中，則知氣之務要浚厲，而爲文不可不嶮截峻拔．風恬波靜，鏡面如拭，上有一天，下有一水，而水天相涵於空明無有之中，則知氣之務要凝定，而爲文不可不溥博淵泓．凡天地之間，萬物之變，可驚可愕，可喜可娛，使人憂，使人悲者，無不收攬於是亭之上，而助吾之氣，則其發於文者，衆體百態，無不兼備，而其視前日之記誦剽竊者，果何如也！

安堂長傳，安孝子傳，安主簿傳，金原城傳，循吏傳 5傳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忠孝·異德之人을 다룬 것들로 山海의 人物觀의 一面을 窺知하게 하는 文章들이다.

山海는 平生동안 많은 詩를 지었으나 다 버려버리고 모아두지 않았다고 上記 自跋에서 말했다. 그러나 後集이라고 區別된 卷4 이하의 詩도 그 量이 이미 적지 않다. 箕城錄에는 數篇의 古體詩가 있으나 後集 鍾峴錄 이하에는 다 五·七言 律絕이다. 山海詩는 感興·寄懷·寫景·行役 등 贈答·次和한 篇什 이외의 作이 많은 편인데, 情志의 表露가 克明하고, 文辭의 雕飾은 없으나, 獨特한 氣韻이 돈다. 疏箚는 大部分 乞退·辭職에 관한 것들이다. 陳弊劄 3篇은 다 3,000言에 達하는 長文으로, 募兵募粟의 効率的인 方法, 屯田煮鹽策, 人材選任策 등을 開陳하고 있다. 序跋·記文·墓祭文 등은 前述한 箕城錄의 散文과 文章上의 性格은 비슷하나 儀禮的이고 形式的인 것이 많다.

李山海는 字는 汝受, 號는 鵝溪·終南睡翁·柿村居士, 韓山人으로 中宗 34年(1539) 漢陽에서 出生, 5歲 때부터 그의 季父 土亭 之菡 밑에서 글을

배웠다. 明宗 13年(1558) 進士試를 거쳐 同16年(1561)에 登第, 翌年 弘文正字로 시작하여, 湖堂賜暇를 받은 후, 諸職을 歷任 領議政까지 지냈다. 宣祖 21年(1588) 光國勳에 參하여 鵝溪府院君을 封했다. 壬辰倭亂 때 西狩論을 固執한 것으로 彈劾을 받아 罷職, 平海로 付處되었다가 3年後에 즉 宣祖 28年(1595)에 放還, 宣祖 32年(1599)에 再次로 領議政이 되었으나, 翌年 다시 罷職되어 漢陽의 한 셋집에 退處해 있다가 光海1年(1606)에 卒했다. 山海는 早年부터 시작하여 長期間 朝廷에서 要職에 있었고 또 壬辰倭亂을 前後한 大變動期에 議政을 지내는 등 하여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批判 내지 非難을 받았다. 山海는 平居時에는 恂恂謹厚하고 變亂에 臨해서는 配慮가 深遠하고 操守가 確固하였고 自己에 닥쳐오는 誹謗·憂傷·橫暴 등은 다 마음 속으로 自己를 反省하는 契機로 만들고 他人을 怨尤하는 氣色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筆者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敎授>

Ⅱ 奎章閣 略史

白 麟

目 次

머 릿 말
Ⅰ 奎章閣設置의 緣由
Ⅱ 奎章閣의 組織
a. 摛文院
b. 奉謨堂
c. 移安閣
d. 皆有窩 및 閱古觀
e. 西 庫
f. 外閣(校書舘)
g. 江都外閣
Ⅲ 奎章閣藏書
Ⅳ 韓末의 奎章閣의 動向
a. 高宗時代
b. 隆熙時代
Ⅴ 日帝下의 動向
a. 李王職圖書室
b. 取調局時代
c. 參事官分室時代
d. 學務課分室時代
Ⅵ 奎章閣圖書의 近況
Ⅶ 整理狀況
a. 日帝時代의 整理狀況
b. 解放後의 整理狀況

머 릿 말

韓國 書誌의 總本山이라고 말 할 수 있는 奎章閣 圖書는 어떠한 過程을 經由하여 傳來되었으며 또 同藏書의 內容的 및 形態書誌學的인 價値는 어떠한 것인지 具體的이고 實用性있는, 卽 學界나 一般 열람자를 爲하여 滿足할 만한 目錄은 아직 完成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一般에서는 同藏書의 內容的 및 書誌學的인 價値를 考察치 않고 奎章閣의 歷史的 意義만을 들어 評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同藏書의 傳來過程을 理解치 못하고 또한 圖書 하나 하나에 對한 書誌學的 硏究結果로 이루어진 圖書解題를 보지 않고서는 同藏書의 性格을 올바르게 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奎章閣圖書의 傳來에 對

한 歷史的인 考察과 그리고 그것의 具體的이면서도 實用性 있는 記述目錄이 早速히 完成되기를 期待하여 왔던 것이다.

1930年 5月 同藏書가 本圖書館에 移管된 以來 迅速하고 便利한 方法으로써 利用者에게 提供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의 完全하고도 永久的인 保存管理를 爲하여 數次에 걸쳐 그 整理가 試圖된바 있으나 目錄作成의 技術과 豫算不足으로 成功치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1963年 8月 하바드大學 燕京學會의 援助에 依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의 研究助成基金中 奎章閣圖書의 整理條로 원화 50萬원의 補助金을 얻게되어 同藏書의 本格的인 整理에 着手하여 1964年 7月 30日로써 韓國本(19.708部 73,431冊)의 總整理의 完成을 보게 되었다.

이제 筆者는 奎章閣圖書에 對한 觀心을 喚起시키는 意味에서 極히 간단하나마 奎章閣의 由來와 同藏書를 열람 또는 정리하기 위하여 이미 만들어진 諸種 冊子式目錄을 紹介하고 이번의 카드式 目錄이 完成되기 까지의 經過를 적어 보기로 하겠다.

Ⅰ 奎章閣設立의 緣由

奎章閣은 李氏朝鮮 第22代王 正祖(1776—1800)가 세운 一種의 王室圖書館이었다.

原來 奎章이란 말은 天子의 御筆宸翰을 뜻하는 것으로 中國에 있어서 奎章閣의 처음으로 設置된 것은 元나라 때이다. 卽 蒙古의 文宗은 天歷 2年(1329)에 中國的인 敎養을 修得하기 위하여 大都 北京에 奎章閣을 設置하고 學問의 所로 하였든 것이 그 始初인 것이다. 文宗은 在位 5年間에 特別한 行事가 없는限 항상 이 奎章閣(奎章閣學士院이라고도 함)에서 經書를 講讀하고 書畵를 鑑賞하였다. 한편 經書大典의 編纂 및 中國書籍의 蒙古語翻譯事業도 여기서 行하였으며 蒙古의 貴族子弟의 敎育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特히 文宗이 高麗 忠惠王에게 國印을 授與하는 儀式도 이 奎章閣에서 擧行되었다. 이 奎章閣은 다음 王인 順帝時代에 文宣閣이라 改稱되여 存續되여

오다가 그 후 얼마아니하여 廢止되고 말았다.

그런데 奎章閣의 設置問題가 우리나라에서 最初에 論議된 것은 李朝 第7代王 世祖 9年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의 建言에 비롯한 것이다. 그는

……乞令臣等勘進御製詩文, 奉安于麟趾堂東別室, 名日奎章閣, 又諸書所藏內閣, 名日秘書閣, 皆置大提學提學直閣應敎等官, 堂上以他官帶之 卽廳以藝文祿官兼差 俾掌出納

이라 하여 奎章閣과 秘書閣의 設置를 建議하였던 것이나 世祖는

若立崇文館 則後世人主或有好製詩文, 專事述作者, 不可從也, 以藏書閣爲弘文館則可其設 兼官大提學一 提學一 直提學一 直閣一 博士一 著作郎一 正字二

라하여 奎章閣(崇文館)의 設置는 不許하고 弘文館(秘書閣)의 設置만을 許可하였던 것이다. 그후 第19代王 肅宗 20年(1694)에 이르러 비로소 梁誠之가 建議한 奎章閣 設置의 問題가 그 實現을 보게된 셈인데 卽 王은 宗簿寺 (璿源譜牒을 撰錄하며 宗室의 愆違를 糾察하는 任務를 맡은 官衙)에 小閣을 別建하여 歷代王의 御製 御筆을 奉安하고 肅宗의 親筆로서 「奎章閣」이란 扁額을 써서 걸었다. 그러나 그 規模는 적었고 職制도 없이 그 管理에 關한 事務는 宗簿寺에 屬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御製 御筆을 모셔둔 一閣의 祠堂에 지나지 못한 것이었다.

李朝 第22代王 正祖(1776—1800)는 그 卽位年 7月에 宋朝의 龍圖閣의 制度에 따라 昌德宮 北苑(秘苑)에 奎章閣을 建立하고 歷代王의 御製 御筆의 奉安과 함께 王室諸書를 收集儲藏하고 6名의 閣臣을 두어 이를 管理케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奎章閣이다.

正祖는 英祖의 世孫으로서 歷代王들 中에서도 보기드문 聖君이 었다. 그는 어려서 부터 學問을 즐겨 하였으며 藏書家로서 東宮時부터 藏書蒐集에 熱中하여 中國藏書家의 遺藏을 探聞하여 購入하는데 더욱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慶熙宮(現 서울中高等學校터) 尊賢閣에 많은 書籍을 儲藏하고 이를 貞蹟堂이라하여 自己의 書齋로 하였다. 이와 같은 正祖의 藏書蒐集家로서의 素癖은 그로 하여금 奎章閣을 設立케한 하나의 重要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奎章閣 設置目的에서 「當時選才學之臣 責一代文明之治」라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正祖이 治道의 理念은 從來와 같이 儒敎思想이 었으나 그는 한 거름 더 나가서 國內의 俊才를 뽑아 學問을 硏究케 하여 그 理論을 政治에 反影시킴으로써 새로운 政治風土를 造成하기 위한 機構로서 設置한 것이 또한 奎章閣이라 하겠다.

그리고 正祖 東宮時의 事情을 살펴 보건데 그는 극히 不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오래도록 계속되여 온 老小論의 黨爭과 外戚의 발호는 政治를 어지럽혀 왔던 것이다. 거기에 英祖 38年의 宣仁門事變은 正祖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이다.

이제 正祖가 登極하기 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 祖父인 英祖는 正妃 貞聖王后 徐氏와 繼妃 貞純王后 金氏께서는 不幸하게도 嗣子를 보지 못하였고 後宮인 靖嬪李氏의 所生인 孝章世子(追贈眞宗)는 英祖 4年에 昌慶宮內 進修堂에서 昇遐하였고, 後宮 暎嬪李氏 所生인 思悼世子가 英祖 11年에 誕生하여 英祖 12年에 王世子로 冊封되여 15歲時부터는 政事를 代理하였다. 그러나 그는 宮中의 謀略으로 父王의 미움을 받아 오다가 英祖 38年 閏 5月 20日에 두주속에 넣어 悲慘한 죽엄을 당하였다. 正祖는 英祖 28年(1752)에 誕生하였다. 그러니까 父親인 思悼世子가 죽엄을 當하였을 때는 10歲의 小年이었다. 그러나 父親의 죽엄의 情景을 目擊하였으니 당시의 事情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正祖는 英祖 52年(1776)에 卽位하였다. 그는 父親 思悼世子의 諡號를 追贈하여 「莊獻」世子라 하고 墓는 顯隆園 廟는 景慕宮이라 하였다. 그리고 思悼世子든 謀略하는 徒輩들을 漸次로 肅淸하기 始作하여 主謀者였던 文昭儀(英祖의 後宮) 洪麟漢(洪鳳漢의 아우) 鄭厚謙 等을 賜死하고 和緩翁主(英祖의 第9女)는 江華로 귀양을 보내고 宣仁門의 變(思悼世子가 變을 當한 곳)의 魁首인 洪鳳漢만큼은 正祖의 外祖父이었으므로 罪를 줄 수가 없어서 公職에서만 물러나게 하였다.

正祖는 10歲에 죽은 孝章世子를 追尊하여 眞宗의 諡號를 주면서 自己의 父親인 思悼世子를 追尊하여 王으로 하지 못한 것은 英祖의 思悼世子를 追尊치 말라는 遺敎가 있은 까닭이다. 王家의 法上 先王의 遺訓은 엄격히 遵

守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表面上으로는 先王의 遺訓을 遵守하여야 했기 때문에 于先 英祖가 昇遐한 뒤에 先王의 御製 御筆 卷帙 浩翰을 奉安할 새로운 閣의 設立을 構想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先王의 編次人 具允明 蔡濟恭 等으로 하여금 史局을 열게 하고 先王의 御製를 鋟梓(板木에 새기는 것)케하고 御墨을 刻石하였으며 御製로서 中外에 散在하여 아직 鋟梓치 못한 것은 二本을 謄寫시켜서 하나는 陵寢(陵墓)에 다른 하나는 大內의 別殿에 다 각각 奉藏하고 처음 이를 御製閣이라 하였다.

그후 얼마 아니하여 正祖는 卽位를 前後한 政局의 混亂을 收拾함과 同時에 앞서부터 構想하여 오던 政治의 革新과 學問의 發展을 위한 큰 事業으로서 第一 먼저 着手한 것이 奎章閣의 設立이라 하겠다.

奎章閣의 本閣인 宙合樓는 正祖卽位年 7月에 竣工되었다. 本閣의 南쪽 門설주엔 지금도 「宙合樓」라는 扁額이 걸려있다.

奎章閣의 職制를 宋朝의 龍圖閣學士의 制에 따라서 定한 것은 卽位年 9月이다. 閣臣의 職階는 提學 直提學 直閣 待敎로 하고 提學에는 黃景源과 李福源을 直提學에는 洪國榮과 俞彦鎬를 각각 任命하였다. 이로써 奎章閣은 規模와 職制를 가춘 하나의 獨立한 機構로서 發足하게 된 것이다.

Ⅱ 奎章閣의 組織

奎章閣은 內閣과 外閣의 制로 構成되어 있었다. 內閣에는 摛文院, 奉謨堂 移安閣(一名 書香閣) 閱古觀, 皆有寫 西庫等의 附屬施設이 있었고 摛文院을 除外한 이들 建物은 모다 秘苑內의 宙合樓(本閣)를 中心으로하여 모여 있었다. 그리고 外閣으로는 校書舘과 江都外閣이 있었는 데 奎章閣의 組織을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11 페이지 參照)

a. 摛 文 院

摛文院은 奎章閣의 事務廳으로 昌德宮 金虎門內 舊都總府의 廳舍를 使用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主로 御眞 御製 御筆 璿源譜牒의 撰錄 奉安에 關한 事項, 日省錄 및 內閣日曆의 編纂, 書籍의 收集 整理 및 圖書의 出納에 關

奎章閣組織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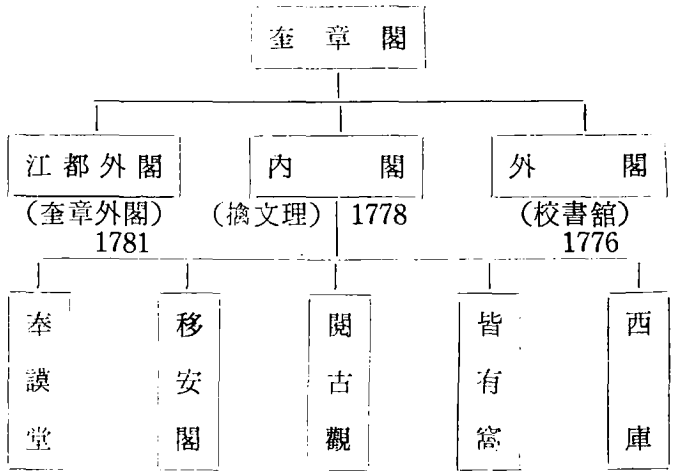

한 事務를 取扱하였으며, 閣臣들이 豹直(長期宿直)을 하는 곳이 었으며 「奎章閣學士之署」이었다. 그러므로 摛文院은 奎章閣을 代表하는 本院이라 하겠다.

廳舍의 前楹에는 永樂鍾을 달아놓아 時間과 有事를 알리게 하였으며 投壺와 琴瑟을 下賜하여 閣臣의 피로를 덜게하였다. 그리고 廳樑에는 6個의 玉燈을 달어 밤에도 휘황하게 장식하였고 뜰앞에는 測雨器를 設置하였다. 이와같이 閣臣들이 讀書와 研究에 專念하며 不便없이 職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設備되어 있었다.

b. 奉 謨 堂

奉謨堂은 宙合樓의 西南쪽에 位置하였으며, 여기에는 列朝의 御製, 御筆, 顧命, 遺誥, 密敎, 璿源譜牒 等을 奉安했었다. 本來 이 奉謨堂은 英祖의 御製, 御筆을 奉安할 目的으로 建立한 것인데 正祖 9年에 珍藏閣에 奉安하였던 것을 여기로 移安하였고 그후 이것이 협소하여 哲宗7年에 昌德宮 景秋內에 移建하여 現在까지 奉安되어오고 있는바 總件數는 6,463件이다.

c. 移 安 閣

移安閣은 本來 書香閣이라 하였는데 여기는 御眞 御筆等을 옮겨다 曝晒하던 곳이 었으므로 移安閣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建物은 宙合樓의 西쪽에 位置하며 넓이가 六間으로 左右에 房이 있다. 후에 와서는 여기에도 國朝寶鑑, 璿源譜略, 御製集 等을 奉藏하였는 바 書香閣奉安總目에 의하면 總數

는 碑文 簇子 4件, 冊文 26種 外에 御製集 163種 1,705冊이다.

d. 皆有窩 및 閱古觀

閱古觀과 皆有窩는 奎章閣의 藏書庫로서 여기에는 中國本을 藏置했었다. 閱古觀은 上下二層으로 되어 있고 皆有窩는 單層으로 軒一間과 煖房二間으로서 ㄴ字形의 同一建物이었다.

이 建物은 6·25 動亂時에 燒失되었으며 거기에 收藏되었던 圖書는 現奎章閣圖書의 中國本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바 正祖 8年 徐浩修에 의하여 編纂된 「奎章總目 皆有窩書 4卷 3冊에 의하면 總 19,652冊이다.

e. 西　　庫

西庫는 本閣의 西北便에 있었음으로 이를 「西序」라고도 불렀다. 여기에는 主로 韓國本을 收藏하였던 것이므로 우리에게 큰 關心을 갖게하나 不幸히도 「奎章閣總目中의 一部인 西序書目二冊」이 逸失되어 그 當時의 藏書內容을 알 수 없음이 遺憾이다. 그러나 高宗年間에 만들어진 것으로 推測되는 「西庫藏書錄一冊」이 現存하는 바 이에 의하면 藏書 總 1,367部 20,663冊이다.

f. 外閣(校書館)

校書舘은 一名 芸閣이라 하여 高麗 以來 書籍의 印刷頒布와 香祝 印篆 等에 關한 일을 맡아 보던 官衙이었다. 그후 奎章閣이 設置됨에 따라 正祖元年(1776) 12月에 奎章閣의 屬司로 된 것이다.

g. 江都外閣

正祖 5年(1781) 3月 當時의 江華留守인 徐浩修에게 命하여 江都行宮의 長寧殿 西便에 있었던 燕超軒을 撤去하고 그 자리에 外奎章閣을 建立케 하였는바 다음해 2月 竣工 되었다. 그리하여 行宮의 別庫에 秘藏되었던 書籍을 移藏하는 한편 本閣의 西庫 및 奉謨堂으로부터 重複되는 書籍을 골라 移置하였다. 그 後에도 書籍이 刊行될 때 마다 내려다 두었고 隨時로 檢書官을 派遣하여 曝晒點檢케 하였으니 그 報告書가 곧 外奎章閣形止案인 것이다.

江都外閣에 收藏되었던 圖書의 內容은 여기서 하나하나 밝힐 수 없으나 正祖 8年 檢書官 李德懋의 調査에 의하면 所藏件數 總 1255冊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收藏되었던 記錄 및 書籍은 高宗 3年(1866)의 丙寅洋擾

時에 프랑스 軍隊에 의하여 一部 重要文獻은 掠奪되고 나머지는 同行宮과 함께 燒失되고 말았다.

Ⅲ 奎章閣藏書

正祖는 奎章閣의 設立과 同時에 東宮時에 가지고 있던 慶熙宮內의 貞蹟堂의 藏書를 옮기는 한편 弘文館의 藏書와 江華行宮의 藏書인 明나라에서 보내온 書籍을 移藏하고 또 北京으로 부터 圖書集成 5022冊을 購入하여 奎章閣의 藏書로 하였다. 圖書의 分類에는 四部分類法을 使用하였으며 圖書簽은 四部裝標法에 따라 經部는 紅色, 史部는 靑色, 子部는 黃色, 集部는 白色, 等으로 그 色갈을 달리하여 區別하였다. 그리고 書籍은 淸나라의 四庫全書館과 같이 經部는 甲庫, 史部는 乙庫,子部는 丙庫, 集部는 丁庫에, 각각 區別 配列하였다.

奎章閣藏書의 整理가 完了된 것은 正祖 5年이다. 그리하여 徐浩修에 命하여 奎章閣總目을 編纂케 하였는 바 閱古觀書目 6卷(그후 正寫하여 皆有窩書目 4卷3冊으로 改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西序書目 2卷이 그것이다.

奎章閣의 圖書는 王은 勿論 閣臣과 文衡들도 自由로 貸出 閱覽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반드시 闕內에 限해서만 許容 되고 外部持出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借出時에는 象牙로 만든 「請出牌」에 書名과 借出者의 姓名을 記入하여 이것을 摛文院에 備付하고 冊을 내다 보게 하였으니 이와같은 圖書貸出方式은 當時의 事情으로 보아 많이 發展된 制度라고 하겠다.

Ⅳ 韓末의 奎章閣의 動向

a. 高宗時代

내려와 高宗 1年 甲子(1864)에 이르러 宗親府가 新設됨에 따라 從來의 宗簿寺는 이에 合併되고, 同時에 奎章閣의 制度도 改編되어 王室의 典籍을 保管하는 任務를 띤 內閣과, 御製御筆을 奉安하는 奎章閣이 둘로 分離되었다.

그리하여 同王 4年에 景福宮 重建이 完役되고 또한 宗親府의 廳舍도 新建되자 奎章閣은 同廳舍內로 옮겼고, 內閣과 外閣은 함께 景福宮의 迎秋門內로 移轉하였다. 宗親府 當時에 奎章閣에 收藏되었던 重要한 圖書는 列聖의 御製御筆以外에 璿源譜略, 國朝御牒, 列聖祖 및 八高祖圖粧帖, 大妃世譜, 璿源錄, 璿源加現錄 等이다.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 關係書類 (三) 奎章閣 沿革資料 參考)

그리고 內閣의 移轉에 對하여는, 小田省吾氏의 말에 依하면 「本閣의 廳舍는 景福宮 西側인 迎秋門內에 있었으며 2翰이었다. 그에는 附屬된 二層建物의 書庫 2棟이 있었다. 그中 하나는 大酉齋 및 聚奎樓의 遍額을 걸었고 間數는 38間, 上層에는 中國出版의 書籍을 藏하고 下層에는 韓國出版의 圖書를 藏하였다. 다른 1棟은 東二樓라하여 間數는 12間으로 冊寶文 綸編, 日省錄을 藏하였는바 藏書의 總數는 三萬餘冊이였다」한다. (舊奎章閣本と其の沿革, 小田省吾, 靑丘學叢 第二十三號)

그런데 「景福宮地圖」에서 보면 慶會樓 西南便에 內閣과 檢書廳 建物이 따로 있고 內閣 後側에 聚奎樓가 있다. (王宮史 李哲源 著 서울 東國文化史 4287年 參照)

어쨌던 從來의 摛文院(內閣)이 이리로 옮겨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후 同王 31年 甲午(1894) 改革의 結果로 宮內府가 新設되면서 同府의 屬司로서 奎章閣의 制度가 復活되었다. 그리고 同年 11月 1日(宮內府布達 第五號)에는 奎章院으로 改稱되었다. 그리하여 王室의 典籍 및 記錄을 保管하며, 列聖의 御製 御筆과 御眞을 奉安하며, 王統譜와 王族牒籍을 管掌하는 것을 任務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奎章院의 長을 卿이라 하고, 記錄 및 奉閣의 2課로 分하여 直學士 1人(奏任), 校書 2人(判任), 主事 4人(判任)의 職員을 두어 所管事務를 맡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 光武 9年 3月 4日(布達 第126號)에 職制를 改正하면서 奎章院을 다시 奎章閣이라 하고 그 長을 學士라 하였다. 그리고 그밑에 直學士 1人(奏任) 直閣 1人(奏任) 待制 1人(奏任) 主事 2人(判任) (後에 書記로됨)의 職員을 두었다.

隆熙元年(1907) 11月 29日 布達 第161號로서 奎章閣의 職制가 다시 改正되어 從來의 奉常寺, 宗簿司, 弘文館 等이 廢止되고 그 所管事務가 모두 이에 移管되면서 奎章閣은 帝室의 典籍 文翰記錄을 保管하며 列聖의 御製, 御章, 御眞과 璿源譜牒 및 進講代撰 그리고 宗室에 關한 全般的인 事務와 議謚祭典에도 參例하는 等 그의 機能은 大幅 擴大되었다. 그리고 職員도 大提學 1人(勅任 名譽官), 提學 10人 以內(勅任, 名譽官), 副提學 10人以內(勅任 或은 奏任 名譽官), 直閣 10人以內(奏任 名譽官), 祗候官 10人(勅任 名譽官), 卿 1人(勅任), 記注官 2人(勅任 或, 奏任) 典製官 2人(勅任 或 奏任), 主事 4人(判任)으로 하였다. 그런데 大提學에서부터 直閣까지는 名譽官으로하고 그들은 侍講 代撰을 掌理하며 議謚祭典에 參列하는 것을 任務로 하였으며, 祗候官도 名譽官이나 이들은 閣務의 顧問에 應하였고, 閣務를 總理하며 職員을 監督하는 卿이 實際 奎章閣의 長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奉謨堂(哲宗 7年 12月 昌德宮 景秋門內로 移建됨), 經板閣의 經籍의 古板木 및 鑄字와, 北漢山行宮의 藏書(一名 京畿史庫)가 이에 移屬되었다. 當時에 調査報告된 바에 의하면 本閣, 奉謨堂, 北漢山行宮의 圖書 記錄을 合한 것이 4萬4千卷이 었다고 한다.

b. 隆熙時代

隆熙 2年 9月에는 奎章閣의 職制를 다시 改正하여 典謨, 圖書, 記錄, 文書의 四課로 한 分課制로 實施하여 事務을 分掌케 하였다. 同年 9月 20日字로서 制定된 分課規定은 다음과 같다.

第1條 奎章閣에 左記 四課를 置함

第2條 典謨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璿源譜牒과 敦寧譜牒의 編纂修正 及 保管에 關한 事項
2. 列聖御製, 御筆, 御章及 御眞의 圖寫及 祭典參列에 關한 事項

第3條 圖書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圖書保管及 出納에 關한 事項
2. 圖書整理及 分類에 關한 事項

3. 圖書購買, 繕寫에 關한 事項

4. 圖書原版保管에 關한 事項

第4條 記錄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公文書類의 編纂及 保管에 關한 事項

2. 公文書類의 整理及 分類에 關한 事項

3. 綸綍, 日省錄' 上奏文, 儀軌冊文及 簽子尙藏에 關한 事項

4. 史庫에 關한 事項

第5條 文書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

1. 進譜及 代撰에 關한 事項

2. 尊號及 謚號에 關한 事項

3. 綸綍及 日省錄 編纂에 關한 事項

4. 史冊의 起草及 修正에 關한 事項

5. 他課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附 則

第6條 本規程은 隆熙 2年 9月 25日부터 施行함.

위의 規定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奎章閣의 機能과 그 所管事務가 擴大되면서 承政院日記, 備局謄錄과 기타 各官衙의 日記, 謄錄類 等이 奎章閣에 옮겨졌고, 또한 江華島 鼎足山, 奉化 太白山, 平昌 五臺山, 茂州 赤裳山 等의 各史庫에 關한 事項이 이에 移管되었다.

奎章閣의 各課는 舊 宗親府의 廳舍에 모이게되고 이를 契機로하여 圖書課에서는 皇室圖書館을 세울 計劃으로 앞서 景福宮內에 移轉되었던 內閣과, 弘文館, 集玉齋, 春坊, 北漢山行宮 等에 所藏되었던 圖書記錄을 奎章閣에서 收集하였던 것이다.

V 合併後 奎藏閣藏書의 變遷

a. 李王職圖書室

隆熙 4年(1910) 8月 29日 合併條約이 締結되고, 日帝는 卽時 韓國에 그

들의 統治機關으로서 總督府를 設置하였다. 이와 同時에 宮內府 奎章閣은 廢止되고 同年 12月 皇室令 第34號로써 代身 李王職官制가 制定되었다. 그리하여 李王職에서는 臨時圖書室을 두고 從來의 帝室圖書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11年 6月에 奎章閣圖書는 모두 總督府取調局에 依하여 引受되었다. 李王職은 처음에 이 圖書의 引繼를 拒絕하였고 移管된 뒤에도 數次에 걸쳐 同 圖書의 返還을 要求한 바 있다. 그리하여 政務總監 山縣는 明治44年 6月 24日字 朝乙發 第5594號로서 江華史庫 및 北漢山行宮本中에서 重複本을 골라 돌려 줄것을 取調局長에게 指示하였으나 取調局에서는 그 分別이 困難하다는 理由를 들어 이를 拒絕하고 말았다. 그 後 史庫整理時에 江華島 鼎足山 史庫本, 奉化 太白山·史庫本 및 平昌 五臺山 史庫本은 國有로 하고 赤裳山 史庫本 만은 李王職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李王職圖書室의 藏書는 이 赤裳山 史庫本을 中心으로 하여 다시 收集된 것이니 小田省吾氏에 依하면 「開國 503年 甲午改革時 京城에 있었던 諸軍營은 모다 廢止되었으나 開國506年(光武元年)에 이르러 九衛隊(皇帝의 輦輿에 隨行하는 軍隊를 統率하는 軍衛로서 그 位置는 舊宗親府의 南側 現首都陸軍病院에 該當)라는 軍營이 宮內府의 所管으로 設置되면서부터 이미 廢止되었던 各 軍營의 圖書記錄은 이를 奎章閣에 移管하였던 것이나 어찌된 일인지 이 圖書記錄은 宮內部로 부터 取調局에 引繼되지 않고 李王職에 殘存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當時 李王職 藏書의 重要部分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李王職藏書閣 古書目錄」에 收錄된 軍營關係圖書를 보면 御營廳謄錄類 6部 11冊, 摠戒廳謄錄類 4部 9冊, 摠禦營謄錄類 1部 9冊, 親軍別營謄錄類 1部 186冊이다. 그러나 取調局引繼書類에 何等 이에 關한 根據가 될만한 書類가 보이지 않으며 또 現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는 奎章閣 圖書中에도 軍營關係의 圖書가 包含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取調局에 引繼할 當時 軍營關係의 記錄만은 除外하고 引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以外에 1911年(明治44年 2月 1日 李王職이 設置된 後 同年 6月 1日 奎章閣

圖書가 取調局에 引繼될 때 까지 李王職에서 購入한 圖書 3,528冊과 全羅北道 茂州郡 赤裳山史庫 및 璿源閣에 奉安되었던 圖書 4,060冊이 李王職에 引渡되어 所謂 李王職藏書를 形成하였던 것이다.

b. 取調局 時代

隆熙 4年 8月 韓日合併과 함께 奎章閣 保管의 圖書는 全部를 朝鮮總督의 所管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皇室圖書館을 新設할려든 計劃은 水泡로 돌아갔고 翌年 2月 1日 李王職官制의 公布와 함께 從來의 奎章閣은 廢止 되었다. 李王職에서는 圖書室을 두고 잠시 同圖書를 管理케 하였다가 同年 6月 1日字로 圖書와 기타 一切를 朝鮮總督取調局에 引繼하였던 것이다.

當時 取調局에 移管된 圖書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書課 保管冊數		
部數	2771 部	
外散秩本	1582 部	
冊數	81525 冊	
外散秩本	20,940 冊	
合 計	5,353 部	100,187 冊
記錄課 保管記錄數		
冊數	11,730 冊	
鑄字	653,921	
	71 盆	
板本	9,501 枚	
附屬品	12 種	
御製 及 御筆刻板	417 枚	
手帖本刻板	53 枚	
額	24 枚	

取調局은 李王職으로 부터 引受한 圖書를 收藏할 곳이 없어서 從來 奎章閣 圖書課에서 使用하던 舊宗親府의 建物을 使用하고 그래도 書庫가 不足하

여 昌慶宮內에 藏書閣을 짓고 남은 벽돌을 가져다가 舊宗親府內에 二層書庫를 新築하고 이를 本庫라 하였다. 그리고 朝鮮式建物인 在來의 書庫를 東西南北의 四庫로 定하고 其他의 建物을 別庫라 假稱하였던 것이다.

本庫의 四層에는 韓國本을 收藏하고 下層에는 實錄 系譜 日記 等을 整理하여 藏置하였다. 東南北의 三庫에는 唐版本(中國本)을 藏置하고, 西庫에는 儀軌類를 藏置하였다. 그리고 引受한 圖書中 餘部가 많은것, 散佚 或은 缺損된 韓國本 및 唐版本은 따로 別庫에 藏置하였던 것이다.

圖書의 配列方法은 四庫全書의 區別에 따라 經 史 子 集의 四部로 우선 大別하고 그중 版種이 善美하고 完全한 것은 正本으로 하고 其他는 副本으로 하였으니 當時에 만들어진 所謂 朝鮮本索引에 〔正〕字로 表示되어 있는 것이 곧 正本임을 뜻한 것이다.

c. 參事官分室時代

取調局은 設置된지 不過 1年만에 廢局되고 1912年(明治四十五年) 4月 1日 總督府官制의 改正으로 參事官室이 設置되었다. 그리하여 앞서 取調局에서 取扱하여 오던 調査事務一切와 同局에 依하여 接受된 書籍은 全部 參事官의 所管으로 移管되었다.

參事官室은 取調局으로 부터 圖書를 引受한 것을 契機로 舊宗親府의 廳舍를 同分室로 하고 奎章閣圖書의 整理와 함께 調査事務에 着手하였던 것이다.

當時에 移管된 圖書에 對하여서는 詳細한 記錄이 없어 그 內容을 알 수 없으나 參事官分室書類(一)의 大正 3年 5月 1日「各 事務의 經過報告書」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參事官分室時代의 總冊數

韓國本	12,887 部	
	69,705 冊	
中國本	5,803 部	
	78,382 冊	
計	18,690 部	
	148,087 冊	

內譯

在來의 分	16,714 部
	137,532 冊
新購入 및 謄寫한것	153 部
	606 冊
寄附받은 것	8 部
	36 冊
太白山 史庫本	1,216 部
	5,777 冊
五台山 史庫本	599 部
	4,136 冊
總務課 引繼分	151 部
	583 冊

參事官分室에서는 上記 圖書를 引受하여 이를 整理하는 한편 韓國에 關한 考事資料의 蒐集에 着手하였다. 蒐集種目으로는 朝鮮金石文 朝鮮圖書 朝鮮各郡邑誌 古文書 冊板 及 參考品 等이 엇다. 金石文에 對하여는 各道에 通牒하여 拓本 또는 寫本을 만들어 送付하게 하는 한편 職員도 直接 出張하게 하여 蒐集에 努力하 結果 다음과 같은 蒐集物을 加藏하기에 이른 것이다.

新羅期	29 種	拓本	28 種
		寫本	1 種
高麗期	87 種	拓本	28 種
		寫本	29 種
朝鮮期	932 種	拓本	491 種
		寫本	441 種

韓國圖書의 蒐集에 있어서도 參事官分室에서 保管整理 中에 있는 韓國本 以外의 것을 各道에 通牒하여 買入 或은 借入謄寫한 것이 59 種 691 冊이 었으며 特히 邑誌는 959 種을 蒐集하였던 바 이로서 全國 邑誌가 完備된 것이다.

參事官分室은 取調局으로 부터 引繼된 舊宮內府 奎章閣 圖書課 所管이었던 奎章閣 藏書 弘文館 集玉齋 春坊의 諸藏書와 記錄課 所管이었던 各 史庫에 藏置되어 있던 李朝實錄을 爲始한 諸書籍 舊韓國 度支部에 依하여 收集된 各宮의 記錄 그리고 그 以後 參事官分室 自體에서 蒐集 或은 寫本한 것 等을 一括하여 이것을 便宜上 奎章閣圖書라고 名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奎章閣圖書가 本格的으로 整理된 것이 參事官分室時代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參事官分室에서는 모든 圖書를 編著者에 依하여 우선 韓國本과 中國本으로 大別하고 이를 四庫全書의 分類法에 依據하여 分類하여 類別假目錄을 作成하였다. 그리고 圖書에는 함부로 「朝鮮總督府」의 朱印을 찍었으며 圖書番號 카드番號 書架番號 等을 表示한 所謂 「番號紙」를 貼付하였다. 現在도 그 當時에 定한 奎章閣圖書番號에 依하여 書籍이 出納되고 있는 것이다.

d. 學務課分室時代

1919年(大正 8年)8月 19日에 朝鮮總督府官制가 改正됨에 따라 從來 內務部에 附屬되어 있었던 學務局이 獨立된 機構로 되었다.

그 後 參事官分室에서 保管整理하여 오던 所謂 奎章閣圖書는 學務局의 所管으로 옮겨졌던바 小田省吾氏에 依하여 「大正十一年(1922)十一月 參事官分室로 부터 同部 學務局所管으로 옮겨졌으며 學務課分室로서 該圖書 全部를 舊位置 卽 舊宗親府의 廳舍에서 保管整理의 責任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以後 昭和5年까지 十年間 이 圖書는 學務課分室에서 保管하여 왔던 것이다.

Ⅵ. 奎章閣圖書의 近況

1923年(大正十三年)에 京城帝國大學(現 서울大學校)이 創立되고 1930年에 同大學附屬圖書館이 新築되자 總督府學務局學務課分室에서 保存管理하여 오던 奎章閣圖書는 그 全部가 京城帝大圖書館에 移管되었다.

當時 移管된 圖書의 總冊數에 對하여 小田省吾氏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移管圖書總冊數	136,038 冊
內　譯	
朝鮮本	73,396 冊
普通本	45,607 冊
特別本	27,789 冊
中國本	62,642 冊

그러나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閱覽案內에 記錄된 冊數는 136.141 冊이다.

筆者가 보건데 이 兩記錄은 모다 正確한 調査에 依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의 圖書出納簿에 依하면 當時 奎章閣圖書는 前後 3次에 걸쳐 移管된 것으로 되어 있다.

卽 第1次는 1929年(昭和3年)10月 29日로서 9,551冊이 移管되었고, 第2次는 1930年(昭和5年)5月 28日에 15,930冊, 第3次는 同年 10月 29日에 136,038冊이 各各 移管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學務課分室로 부터 移管된 總冊數는 151,519冊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前記한 移管圖書中 第1次 및 第2次에 移管된 것은 그 大部分이 所謂 唐版本으로서 이는 一般 東洋圖書와 함께 分類整理되었고, 第3次에 移管된것중에서 增補文獻備考 7,854冊을 除外한 나머지 128,184冊만이 事實上 別置되어 現在 奎章閣圖書로서 特別 取扱되고 있는 것이다.

奎章閣圖書가 同大學에 保管轉換된 것은 圖書解題作成을 從來와 같이 繼續하고 될수있는 대로 이를 發行하여 關係方面에 配布하고 閱覽者의 便宜를 圖謀한다는 約束下에 引受한 것이다.

그 後 同大學圖書館에서는 奎章閣圖書整理計劃을 세워 分類는 一般圖書와 같이 하고 카드 目錄을 作成하는 한편 精密한 解題를 하여 印刷目錄을 編纂刊行할 計劃이 었던 것이다. 同計劃書에 依하면 奎章閣圖書 總 128,184冊에 對하여 滿 11年 11個月에 걸쳐 그 解題를 完了하고 1948年 卽 昭和23年에 그 印刷目錄을 刊行할 豫定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長時日을 要하는 巨大한 事業이었던 것이므로 當時에는 計劃뿐

으로 그 事業은 成就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6.25 動亂中에 奎章閣圖書가 어떻게 保存되었던가 이에 對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므로 釜山에 疎開한 經緯를 밝혀 두겠다.

1950年 12月 10日 當時의 館長이었던 李丙燾 博士의 指揮下에 筆者는 承政院日記 3045冊을 第1次로 疎開하였고, 第2次로 同年 12月 23日 當時 서울大學校 附屬病院長이 었던 金斗鍾 博士에 의하여 李朝歷代王의 實錄(江華本)1,188冊과 日省錄 2,329冊이 疎開되었으며 第3次로서 同年 12月 28日 當時 法科大學 司書이었던 扈基顯氏에 의하여 實錄(太白山本)864冊과 備邊司謄錄冊이 疎開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圖書는 疎開할 事情이 못되어 本館書庫에 그대로 남겨 두고 釜山에 내려 갔던 것이다.

그후 1953年 8月 서울 收復과 함께 釜山에 疎開하였던 前記圖書를 올려 왔으며 또 書庫에 남겨 두었던 奎章閣圖書도 多幸히 그대로 保存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재 奎章閣 圖書의 形成過程을 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77年 奎章閣 藏書構成

奉漢堂	移安閣	皆有窩	閱古觀	西 庫	江華外閣
↓	↓	↓		↓	↓
6463	未詳	19,652		20,663	約 500

1907年

弘文館	集玉齋	春 坊	北漢山行宮
4,252	39,817	20,116	7,936

韓末 奎章閣 圖書課所收藏書

總計 5,493部 103,680冊 ←

1911年 總督府取調局引受 ↓

圖書課分	523部	100,187冊
記錄課分		11,730冊
計		111,917冊

1912年 參事官分室 引受 ↓

韓國本	12,887 部	69705 冊	太白山本	1216 部	5,777 冊
中國本	5,803 部	78392 冊	五台山本	599 部	4,136 冊
計	18,690 部	148087 冊	江 華本	約	5000 冊

1922 年 京城帝附屬圖書舘大

1 次 移管	2,074 部	9,553 冊	—640 部 12,794 冊은 東洋書 轉管 轉換
2 次 移管	1,089 部	15,970 冊	
3 次 移管	13,471 部	128,174 冊	殘餘 : 3,520 部 12,729 冊

現在數

16,991 部 140,913 冊 (但 이 數中에는 未詳分 141 部 312 冊이 包含됨)

以上에서 奎章閣圖書의 形成過程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의 整理를 爲한 過程의 槪略을 적어 보겠다.

Ⅶ 整 理 狀 況

a. 日帝時代의 整理狀況

① 奎章閣圖書, 朝鮮本, 6 冊 謄寫版

이 目錄은 參事官分室時代에 朝鮮總督府에서 만든 것으로 推測된다. 이것은 奎章閣圖書의 一連 番號 順으로 作成되어 있으며 同 目錄中 넷째卷도 貴重本이고 (12,719—15,150, 計 2,243 部 16,744 冊) 第 6 卷은 特別本인바 量案 謄錄類 等이다. 總 2,044 部 8,698 冊이다(圖書番號 17641～19684). 그런데 이 冊은 6 卷으로 되어있고 卷別로 실려 있는 圖書의 部數, 冊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 1 卷	4,008 部	15,885 冊	
第 2 卷	3,695 部	13,561 冊	
第 3 卷	3,155 部	7,831 冊	
第 4 卷	2,243 部	16,744 冊	(貴重本)
第 5 卷	1,476 部	2,246 冊	
第 6 卷	2,044 部	8,698 冊	(特別本)
總 計	16,621 部	64,965 冊	

② 朝鮮圖書部類目錄, 朝鮮總督府 5 冊 謄寫版

이 目錄은 奎章閣圖書가 參事官分室에 移管된 뒤 即 大正 6 年(1917) 頃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바 經史子集으로 大別되어 史部만은 上下 2 冊이고 다른것은 各一冊이다. 各部 아래는 各各 類別 細分하였고 書名, 著者, 冊數, 圖書番號 等이 記載되어 있으며 備考欄에 移管한 것을 明示하였다.

編者年時 版種, 出版年時 等도 調査 記入할 豫定이었던 것 같으나 다만 版種에서 版本, 寫本만을 區別하다가 그것도 몇卷 못하고 斷念하고 말았다. 또 欄外에 正本, 複本을 表示하였다.

③ 奎章閣圖書原簿, 2冊, 朝鮮本 支那本

本臺帳에 現在高를 現品과 對査한 뒤에 引繼한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大正 6年 10月 1日

前任 物品會計官吏……中島伊十郎

後任 物品會計官吏……瀧口亮造

그러고 同臺帳에 拂出된 圖書의 番號, 圖書名, 冊數, 舊冊負 等이 記入되어 있으므로 이 目錄에 依하여 奎章閣 圖書가 日帝時에 寄贈 乃至 保管 轉換된 事由를 알수 있다.

④ 奎章閣 圖書(中國本) 索引, 朝鮮總督府, 1冊, 謄寫版

이 目錄은 學務課分室時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日本 五十音字順 目錄이다. 書名, 編著者名, 圖書番號, 備考에 移管된 事由가 記載되어 있다. 또 앞에 五十音字로된 漢字索引이 있다.

⑤ 奎章閣 圖書(朝鮮本) 索引 1冊, 謄寫版

이 目錄은 中國本索引과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 著錄體裁는 同一하다.

⑥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冊

이 冊은 大正 8年(1919) 3月에 만들어진 것으로 總 1,121種의 書名, 著者, 卷數, 冊數 圖書番號 및 간단한 解說을 兼한 目錄이다.

⑦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冊

이 冊은 昭和 7年(1932) 8月에 만들어진 것으로 위의 것과 같은 內容이긴 하나 圖書番號를 記載하지 않았으며 朝鮮通信社에서 發行한 것이다.

⑧ 朝鮮圖書解題. 朝鮮語研究會. 1冊

이 冊은 朝鮮語研究會 編으로 昭和 19年(1943)에 上記한 冊을 民衆時論社에서 再版發行한 것이다.

⑨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朝鮮總督府 316p

大正 10年(1921)에 만든 經.史.子.集別 部類目錄이며, 書名. 卷冊數. 編著年時. 圖書番號를 記錄하였으며 寫本과 印本을 區別하고 奎章閣 圖書가 學務課分室에 移管된 뒤에 增加分을 包含한 것이다.

⑩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補遺 1冊. 西紀 1934年

奎章閣 圖書가 本校의 前身인 京城帝國大學으로 移管된 後에 出版된 것이며 內容은 前記 古圖書目錄과 同一한 體裁로 收錄되어 있다.

以上은 日帝時代에 만들어진 目錄들이다. 다음은 解決後에 整理한 狀況을 들어 보겠다.

b. 解放後의 整理狀況

① 奎章閣圖書 整理假目錄 카드. 約 30,000 枚

② 奎章閣圖書 朝鮮本索引. 4 冊.

西紀 1960 年 奎章閣 圖書中 朝鮮本 70,000 餘卷에 對한 가. 나. 다 音順索引임.

③ 奎章閣圖書 中國本索引. 1 冊.

西紀 1962 年 奎章閣圖書中 中國本 70,000 餘卷에 對한 가. 나. 다 音順索引임.

서울大學校 圖書館에서는 1961 年 6 月 26 日부터 同年 10 月 26 日까지 4 個月에 걸쳐 臺帳에 依한 點檢을 實施하고, 同月 27 日부터 韓國本의 書名索引作業에 着手하여 1962 年 12 月 29 日에 「奎章閣 圖書韓國本 書名索引」1 部 4 冊을 作成完了했다.

이 索引이 完成된 뒤 곧 이어서 中國本目錄의 索引作業에 着手하여, 1963 年 1 月 18 日까지 「奎章閣 圖書 中國本 書名索引」 1 部 4 冊을 完了하였다. 그러나 이들 目錄은 日本語索引에 代替하기 爲하여 만든 것이므로 目錄이라기 보다는 一種의 우리말 音字索引이라 하겠다.

同圖書館에서는 奎章閣圖書의 再整理를 꾀하였으나 財政上 隘路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多幸히 하바드大學 燕京學會의 援助를 얻어 먼저 韓國古圖書의 再整理를 카ㅡ드式으로 目錄을 完成하였다. 이번에 整理된 韓國古圖書中에는 日帝時에 整理刊行된 三種의 圖書目錄에 收錄되어 있지 않은 數百種의 文集 拓本들도 包含되어 있어 奎章閣 圖書라는 이름으로 保管되어 있는 韓國圖書를 總整理한 셈이다. 아래에 利用者의 參考를 위하여 그 整理方式을 說明하여 둔다.

標目으로 採擇된 著者名은 目錄法의 原則에 따라서 著者의 本名을 採記하였다.

目錄의 記述은 現代目錄法에 따라 書名, 卷次數, 編著者名,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代, 卷冊數 版種, 冊의 크기를 記述의 重要內容으로 하고 이에 版種과 刊行年度를 鑑定하는데 도움을 주기 爲하여 版式의 形態, 序, 跋의

年代, 藏書記, 藏書印記 등과 함께 書誌上 重要視되는 事項을 註記하였다.

目錄의 形式은 二段式 方法을 擇하였으나 對照事項과 版式以下의 註記事項과의 明確한 區劃을 爲하여 그 사이에 一行의 空白을 두었다.

刊行年度의 表示는 序 跋의 年紀中에서 最後의 年紀를 取하여 記載하였으며 刊行年度를 全혀 알수없는 것은 [刊年未詳]이라 表示하였다.

古活字本의 區別은 確認된 活字名에 限하여 對照事項 다음에 「古活字本(丁酉字)」等으로 表示하였으며, 確實치 않는것은 다만 「古活字本(後期木活字)」等으로 表示하였다.

같은 圖書의 異版을 識別하는데 도움을 주기 爲하여 版式의 表示에 版의 邊, 半張의 匡廓의 크기 行數, 各行의 字數 및 版心에 있는 魚尾의 形態등도 記述하였다.

寫本인 경우에도 그것이 版에 올리기 爲하여 만들어진 底本인 것은 目錄記入에 板匡의 形式을 表示하였다.

卷, 冊數는 同一圖書中 가장 完全한 것에 따라 表示하였으며 缺本, 落張이 있는것은 「所藏事項에 缺本, 落張 및 腐蝕된 部分을 註記로서 表示하였다. 또 같은 圖書라 할지라도 異版本, 完本, 零本, 裝釘이 다를것은 各各 그 記入을 달리하였다.

標目은 原則的으로 「東亞漢韓大辭典」에 表示된 音에 따라 한글로 飜字하였으며 頭文字의 音은 소리 나는대로 音에 따르고 慣習上 이미 俗音化 한것은 俗音에 따라 表記하였다.

圖書의 排列은 漢文字의 部首 및 字劃을 無視하고 標音의 가, 나, 다 順에 따라서 排列하였다.

圖書番號는 各各 目錄記入의 右側下端에 表示하였다. 이 番號는 奎章閣圖書가 書架上에 配列된 位置를 指示하는 것이다.

以上 拙稿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를 土臺로하여 奎章閣의 由來와 藏書의 蒐集 및 그 傳來의 大略을 槪括하고, 同藏書를 爲한 諸種 目錄에 對한 것을 說明하였다. 이제 奎章閣圖書를 爲한 앞으로 할 事業을 提示하는 것으로서 끝을 맺고자 한다.

앞으로의 整理를 爲하여 繼續되어야 할 事業으로는 同圖書의 分類問題와 아울러 中國本 7萬冊에 對한 目錄作成이다. 그런데 奎章閣圖書의 分類作業에 先行되어야 할것은 分類表의 制定이라 하겠다. 同藏書가 이미 주어진 一連番號順의 圖書番號에 따라서 配列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만든 카드目錄으로서도 充分히 利用 할 수는 있으나, 꼭 分類別目錄을 要求하게 된다면 그에 앞서서 分類表가 決定되어야 한다. 漢籍分類를 爲하여 이미 提示된 分類法이 許多하나 모두 一長一短이 있어 韓國本과 中國本을 같은 體系 밑에서 處理할수 있는 좀더 統一的이면서 標準이 될만한 分類表가 아쉽다.

이 問題는 좀더 時間을 두고 各種分類表를 調査研究한 후에 決定 하여야 할 問題라고 본다. 그리고 中國本 7萬冊에 對한 目錄作業은 記述目錄의 原則이 이미 세워져 있으므로 豫算만 마련되면 언제라도 着手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 :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司書課長>

Ⅲ 法律參考圖書解題(法科大學圖書館所藏分)

金 德 勳

法律學辭典 金曾漢 等編 法文社 1964. 1217 p.

本辭典은 讀者가 우리나라의 法을 理解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意圖에서 엮어졌다. 그리고 全地域에 걸쳐서 法律上의 用語, 槪念을 추려내어 簡潔한 說明으로 正確한 意味를 理解할 수 있게 하였다. 本辭典은 小項目主義를 取하였다. 說明은 單純히 用語의 解說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現行法의 內容을 把握할 수 있게 하고, 法令體系속에서의 相互關聯을 提示하고 또 法令改廢의 經路까지도 忠實히 나타내어 하나의 法令百科全書로서의 一面을 갖추었다. 그와 同時에 現行法의 理解에 必要한 限度內에서 法哲學, 法制史 및 外國法의 分野에까지 法律上의 基本的인 制度나 主義에 對하여 學理的인 解說을 해주는 法律學敎科書로서의 一面을 겸비했고 卷末에 人名, 法諺, 法制史年表가 실려있다.

新法律學辭典 李恒寧 等編 賢文社 1963. 1305 p.

本辭典은 法令改廢의 자취를 充實히 밝히고, 現行法의 相互關聯을 正確히 표시함과 아울러 各地域에 걸친 法律上의 用語, 槪念을 빠짐없이 項目으로 게시하고 이에 간결한 說明을 加했다.

本辭典은 六法뿐만 아니라 널리 社會法, 經濟法, 勞動法, 產業法 및 우리나라의 慣習法 이외에 法哲學, 法制史 및 外國法의 分野에도 연구적인 解說을 加했다. 그리하여 法律學敎科書의 一面을 갖추었다.

法學辭典 末川 博 等編 日本評論社 1951 1251 p.

本辭典은 社會科學에 必要한 法律關係項目 15,000을 選擇하여 解說하고 있다. 그 中에는 各種法令, 法學學說, 法制史, 術語 및 事實, 法學者傳記, 法諺이 包含되어 있으며 日本을 中心으로 하여 英美 및 大陸法에까지 미치고 있다.

新法律學辭典 我妻 榮 編 有斐閣 1952 1200 p.

戰後에 各種法令을 中心으로한 項目을 選擇하여 法律學, 法學一般, 法制史, 外國法에까지 法律上의 基本的制度, 主義, 學說, 學者傳 法諺까지 10,000여 小項目이 收錄되어 있다. 每年 新法令의 改廢나 新術語 新事項의 發生으로 因하여 생긴 新項目이 보충되어 출판 되고있다.

英美法學辭典 金致善 編著 韋聲文化社 1957 74 p.

英美의 法律書籍을 읽으려는 學生들에 무엇보다 必要하다. 項目의 選擇에 있어서 一般的인 英美의 法律書籍을 읽기에 充分한 程度로 比較的 많은 項目을 收錄하였다.

英美法辭典 高柳賢三 編 有斐閣 1961 742 p.

民法辭典 我妻 榮 編 一粒社 1959 384 p.

本辭典은 民法의 規定에 重要한 內容을 端的으로 敎示하는 小項目字典이며 各項內容이 豐富하게 編輯되어 있다.

民事法學辭典 末川 博 編 有斐閣 1960 1082 p.

이 辭典의 內容은 法一般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民事法에 關한 事項을 取扱하는 것이며 大體로 實務에 依한 法曹界나 官公署 會社等方面의 法學에 對한 硏究나 깊은 關心을 가진 硏究者나 學徒들의 利用을 爲해 企劃된 것이다. 大體로 詳細하게 代表的 學說이나 判例의 程度만을 記述했다. 여기에는 社會法, 經濟法 및 勞動法의 分野에까지 取扱했다.

各項目에는 最初의 外國語術語를 表示하고 意義 또는 槪念 要件 効果等 順次的으로 說明을 加했고 問題로된 點을 指示하고 다음에 主要한 文獻을 表記하여 刊行된 것이다.

刑事法學辭典 瀧川幸辰 等編 有斐閣 1957 836 p.

本辭典은 刑事法의 硏究者를 爲하여 編輯하였다. 項目은 中項目이 850 以上, 小項目總數가 4000 以上으로 執筆者가 44 人이나 動員되었으며 대체로 刑法, 刑事訴訟法에 關한 事項을 위주로하여 刑事學의 諸事項까지도 취급하였다.

國際法, 國際政治辭典 靑林書院 1960 323 p.

題目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際法 關係의 項目과 國際政治 및 外交史에 關한 項目等을 斯界의 권위자들이 分擔하여 執筆하였다. 그리고 各項의 末尾에 執筆者의 이름을 記入하여 責任을 明確하게 하였다.

勞動法辭典 有泉 亨, 外尾健一共著 一粒社 1961 360 p.

大韓民國現行法令集 法制處 編 第1—12卷

이 法令集의 臺本은 1963年 3月 1日 現在를 基準으로하여 收錄하였다. 1963年 3月 1日 이후 制定改廢되는 法令은 追錄을 適宜 발간하고 加除를 하여 그 內容을 補充하도록 하였다. 이 法令集에 收錄된 法令은 現在 效力을 갖고 있는 모든 法令 즉 憲法, 法律, 國家再建最高會議令,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緊急命令, 大統領令, 國務院令, 閣令, 部令, 最高會議規則, 大法院規則, 監査院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法令的性質을 가지는 訓令과 기타 告示를 網羅하였다. 다만 條約은 收錄하지 않았다. 一時施行에 그치는 法令 기타 一般에게 周知의 必要가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法令의 明文에서 또는 다른 法令과의 關係에서 失效되었거나 理論上 당연히 失效되었다고 認定되는 法令은 그 收錄法令의 性質別로 憲法, 選擧, 國會, 法院, 行政組織, 人事, 賞勳 및 典禮, 文書 및 統計, 地方自治, 治安, 外務, 國防, 國土建設, 財務, 法務, 民事, 刑事, 農林, 水產, 商工, 鑛業, 物價調節 및 外資導入, 敎育, 文化, 公報, 原子力, 保健, 社會, 運輸, 觀光, 氣象, 遞信의 32編으로 大別하고 各論을 다시 章節로 分類編纂하였다. 公布式令에 의한 法令公布 書式은 이를 省略하고 公布年月日 및 番號는 題目 다음에 揭載하였다. 檢索에 便하게 하기위하여 앞表紙 뒷면에 大韓民國現行法令集 編制一覽表를 붙였다.

法典 趙相元 編著 玄岩社 1964 2764 p.

이 法典은 1964年 4月 10日 現在의 現行法律, 條約, 大統領令, 國務院令 閣令을 비롯하여 主要한 部令 規則 告示等에 이르기까지 되도록 廣範하게 收錄하였다. 收錄된 全法令을 總 15編으로 그 性質에 따라 分類한다. 이 法典의 長期的效用을 維持하기 위하여 別途로 "連鑑追錄"을 隨時로 發行하고 있다. 憲法, 民法, 商法, 民事訴訟法, 刑法 및 刑事訴訟法의 事項索引을 卷

末에 添附하였다.

外國法典 趙相元 編著 玄岩社 1962

와이말憲法, 獨逸聯邦共和國基本法, 瑞西聯邦憲法, 伊太利共和國憲法, 日本憲法, 佛蘭西共和國憲法, 中華民國憲法, 比律賓憲法, 아메리카合衆國憲法, 아메리카合衆國憲法改正等이 收錄되어 있다.

岩波 六法全書 末川 博 編 岩波書店 1963 2990 p.

大法院刑事判例集 大法院法友會 編 語文閣 1963—

本判例集은 成文法을 補充하여 法律의 解釋과 그 適用의 指針이 된다. 그리고 國民의 法的生活을 正當히 規律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研究가 法律自體를 生生하게 理解하는 尺度가 되고 立法論에 對하여도 重要한 示唆가 된다. 그리하여 法律學徒와 實務家들에게는 本判例書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本判例集은 民事, 刑事, 行政等으로 區分하여 各別冊으로 編纂되었다.

新判例體系 末川 博 監修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 1961年 總 44卷.

公法編, 民事法編, 刑事法編등 각계의 권위자인 學者, 判檢事 辯護士 등 다수의 協力으로 이루워졌다. 本書는 最高裁判所發足後에 判例(新判例)를 綜合的으로 編輯하는 方法을 採擇하고 新判例에 對하여는 最高裁判所의 判例集 및 高等裁判所判例集을 收錄하였다. 高等裁判所의 判決外에 地方裁判所의 判決에 對해서도 重要한 것은 收錄하였다.

判例體系 我妻 榮 等編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55年 總 99卷

判例의 意義와 比重은 極度로 重大하게 되어서 日本에 있어서도 英美와 同一하게 나날이 축적된 수다한 判例를 體系的으로 配列하였고 이 冊을 봄으로써 關係判例를 把握하고 理解할 수 있으며 따라서 判例集의 重要性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法律學徒와 法曹系 實務家들에게는 絕對的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戰前에는 啓法會에 의해서 判例體系가 刊行되어 왔으나 戰爭으로 因해 中斷되었었고 그후 계속 出版되었다. 일단 舊判例體系를 解體하고 舊判例를 各改正法에 좇아서 新判例를 採擇한 外에 다시 公法關係 및 新分野에까지 이루고 그와같은 學問的體系에 依하여 分類編輯했다. 各部門의 編輯은 主로 大學의 敎授 및 裁判所, 法務省의 實務家들에 의해서 編輯되었다. 各

部門의 特殊事情을 존중하며 全體의 統一을 기도하면서 正確하게 網羅하여 學問的으로 記述했다. 무엇보다도 檢索에 便利하게끔 編輯이 되었다.

法律學說判例總覽 中央大學出版部 1964年

租稅判例 中川一郎 編 三晃社 1959

新民法通覽(註譯) 張厚永 監修 法通社 1963 812 p.

新商法通覽(註譯) 徐燉珏 共著 法通社 1963 1418 p.

憲法總覽 金哲洙 編 玄岩社 1964 744 p.

民事判決書集 金昌奎 編 三洋文化社 1963 191 p.

實務民事訟訴執行書式集 孫戊鉉 編 親學社 1963 600 p.

司法年鑑 1960年版 法院行政處 發行

英美法關係類

Corpus Juris, Brooklyn 1941—1937, 72 Vols.

Corpus Juris는 百科辭典式으로 法律의 全分野를 한 叢書로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모든 判決에 記述된 名詞 및 形容詞의 法律用語들이 包含되어 있다. 이 冊은 일곱의 重要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많은 細目과 453의 細區分과 論題로 나누워져 있다. 用語 및 述語, 法律格言들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配列되어졌다. 어휘 索引이 한卷으로 되어있으며 셋째권은 原文의 註釋이 실려있다. 그리고 1921—1932年까지 年刊의 註釋이 실려졌다.

Corpus Juris Secundum, Brooklyn N.Y. 1936—(1951) 69 vols.

大部分의 美國辯護士는 法律問題의 調査를 始作할때 最新版의 百科全書인 Corpus Juris Secundum이나 American Juris Prudence중의 하나부터 始作한다. Corpus Juris Secundum은 法을 7個의 大區分 즉 persons, property, contract, torts, crimes, remedies와 government로 나눈다. 그 各大區分은 小區分으로 再分되고 그 再分된 小區分은 數百個의 Topics(또는 Title)로 나누져있다. 法律百科全書를 使用하기 前에 그것의 使用에 익숙해지기위해서 目次를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大區分에 自己의 問題가

該當되는가를 決定하여야 하며 順次的으로 小區分 그리고 Topic 順으로 내려가서 찾게되어 있다.

Encyclopadia of the Social Science, MacMillan, 1954, 8 Vols.

Law Dictionary with Pronunciations, by James A. Ballentine. Lawyers Cooperative, 1948.

Black's Law Dictionary, by Henry Compbell Black, West, 1951,

Co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d National and State, Columbia Univ. 1962, 3 vols.

United States Code Annoted, St. Paul,(1927—1950)

The United States Code Annotated(약어로서 U.S.C.A. 라고도 함)는 대개 67卷으로 완결이 되어있는데 미합중국 법전의 50個 타이틀에 의해서 配列되여 있다. 이리하여 미합중국법전의 인용문은 U.S.C.A. 와 Vice Versa 의 인용문이다. 주석문은 거의 완벽하며 주와 연방법원의 판결요약문,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관습적인 소견이 수록되어 있다. 그 질은 누가적인 포켓책과 팜프렛 및 부록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것이 추록되고 있다. 그리고 그질은 4권에 주제색인이 실려있고 한권에는 여러가지의 법전 들이 수록되 있다. 그 법전은 미합중국 법전과 U.S.C.A 참조로 부터 법률관계가 수록되어있는 다른 편집물로 지시하여 준다.

Supreme Court Reporter, 1882—1949 106 vols.

이 出版物은 웨스트出版社에서 發刊되고 있는 국립편제체계의 一部이다. 이책의 특징은 키넘버(Key Number)가 되어있는 점이다. 이판은 1882년에 전 106卷으로 된 官纂이다.

U.S. Supreme Court Reports Digest, Lawyers Co-op., (1789—dated).

이 冊은 特殊主題分類에 의해서 配列되었는데 1卷의 內容을 要約하면 (1) L.R.A. 나 A.L.R. 에서 U.S. 연방 재판판결록으로 인도하게끔 그 찾는 범위를 같은 참조표를 使用하고 있다. (2) Lawyers Edition 에 있는 주석에 까지 index 가 되어있고 (3) 법령의조문, 헌법포고문 그리고 논문들의 인용문이 있으며 요약되어 있다. 여기에는 미합중국의 헌법및 연방법령, 주헌법, 주법

령, 포고문, 논문, 외국법이 기록되어 있다. 제 9 卷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법원의 판결록과 全聯邦의 目錄 그리고 法院에서 訊問되어진 주판결록이 기재되어 있다. 10 卷은 用語索引이다. 실제적으로 대법원판결에까지 이 索引이 參照되고 있다.

American Law Reports Annotated, 1919—1948, 175 vols.

American Law Reports의 出版은 1919年에 始作되었다. 내용은 주석이된 법관들의 판결록과 판례가 있다. 체제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주석이 판례체계에서도 네개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모든 冊에서 선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판례를 취급했으며 많이 참조되는 판결록이다.

Federal Reporter,(1880—1924) 300 vols.

… 2 nd Series (1924—1950) 184 vols.

1879 년부터 최근까지 지방법원의 판결기록이 Federal Reporter에 수록 되었다. Federal Reporter는 두총서로서 구성되었다. 이 冊에는 미국의 지방법원의 意見書및 법원의 주장들이 실려있다. 또 미국의 上訴에 대한 意見書, 컬럼비아지방의 법원상소와 법정의 관습및 특허공소가 실려져 있다. 1932 년전부터 이런 의견서가 실려졌다. Federal Reporter와 Federal Supplement는 정기적인 관찬은 아니다. 두질이 모두 West出版社의 Notional Reporter System의 一部이다.

Martindale-Hubbell Law ~~Dictionary~~ Directory, 1963, 4 vols.

M.H.L.D는 美國, *Canada*, *Newfoundland* 기타 외국법률가의 명부가 수록되어있다. 이 인사록은 傳記부분과 등록된 면허소유자의 변호사 명부와 나머지부분은 법정일정, Uniform acts, 특허된 상표및 세법등 미합중국과 외국법의 요약이 기록되어있다.

Index to Legal Periodicals,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ilson, 1909

월간목록으로서 년차적으로 누가된다. 1926 년부터 出版되었다. 3 년마다 년차적으로 누가본이 생긴다. 누가본은 저자색인과 주재색인 그리고 판례체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1940 년 이후에는 잡지색인이 실려졌다. 많은수의 정

기간행물이 1908년에는 39종이 색인되였으나 년차적으로 152종의 법률관계 정기간행물이 색인되어졌고 46個의 사법협회 보고서와 1943—46의 사이에 12개 재판소회의록 색인이 실리게 되었다. 1908년~25년간의 년차적 색인이 완성된후부터 3년마다 누가본이 나오면 그때 그때 부록이 나온다.

<筆者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司書>

次號 資料 投稿歡迎

本報 次號에 揭載할 原稿를 募集합니다.

本校 敎職員 및 圖書館專門職 또는 事務職員으로서 圖書館學 및 大學圖書館에 關한 硏究論文과 圖書館管理에 參考가 될 體驗記 其他 大學圖書館發展에 有益한 內容을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投稿를 歡迎하오니 200字 原稿紙 50枚以內의 것을 本報 編輯者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Ⅳ 中央圖書館 主要業績 槪要

1. 奎章閣圖書 韓國本整理

가. 本館에서는 1963年 8月에 하바드大學 燕京學社의 援助에 依한 本校 文理科大學 附設東亞文化研究所의 研究助成基金中, 奎章閣圖書 韓國本의 整理費를 補助받아 韓國本總 19,708部(73,431冊)의 整理를 1964年 7月末에 完了하고 研究資料의 保存供用에 資하게되었다.

나. 1964年 4月에 奎章閣圖書 韓國本中, 集部의 冊子目錄을 謄寫版으로 發刊함으로써 斯界의 關心을 가진 學者들의 研究活動에 寄與한바있다.

2. 一簑文庫 圖書整理

이 文庫本은 6. 25 動亂으로 釜山疎開當時 本校 前文理科大學長 故 方鍾鉉(一簑)先生의 舊藏書 約 5,500冊을 引受한 圖書로서 國文學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된다. 이를 人員不足으로 整理를 하지못하여 그 利用에 提供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던 것이다. 今年度에는 特勤費와 雜給豫算으로 이의 整理를 着手하여 1964年 12月 15日頃에는 完了할 豫定에 있다.

3. 古文書 假整理 着手

約 五萬餘枚에 達하는 本館所藏 古文書는 本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에 對한 하바드大學 燕京學社로부터의 研究助成金의 一部 補助에 依하여 1964年 9月부터 假整理에 着手하여 現在 進行中에 있으나 그 基本整理는 이에 所要되는 諸般與件이 具備되어야만 着手하게 될것이다.

4. Micro 複寫施設 設置

奎章閣圖書를 爲始한 各種貴重圖書의 保存과 이들 資料의 交流와 本館에 收藏되지 아니한 貴重資料의 蒐集 및 保存 그리고 이들 資料의 活用 및 圓

滑한 奉仕活動等 多角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施設로서 本館의 宿願이던 Microfilm 撮影機, 現像機, 複寫機, 리다等의 諸機械를 하바드大學 燕京學社로부터 寄贈받아 1964年 7月에 本館閱覽課에 設置하고 試驗運營期間을 거쳐 1964年 10月부터는 이의 本格的인 稼動을 보게되었으며 이의 附帶施設로서 圖書複寫機도 1963年 12月에 設置하여 敎授와 學生들의 硏究活動에 寄與하고 있다.

5. 藏書點檢事業

藏書點檢 내지 藏書實態把握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事項이 記錄된 基本資料가 되는 것은 書架目錄이라 할진대 本館의 書架目錄은 第2次大戰, 8.15 以後의 混亂, 6.25 動亂等 混亂期에 大部分이 散逸되어 藏書點檢내지 藏書實態把握이 到底히 不可能하게 되었기 1958年 以來 이 書架目錄의 復舊事業에 着手하였으나 日增月加하는 現業務에 쫓기어 餘暇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던 탔으로 그 進展이 遲遲不振하였다. 1961年 7月부터는 專擔職員을 配置하여 이를 擔當케하였으나 이의 施行도 豫算難으로 얼마못가서 挫折되고 現業務中의 餘暇를 利用하는 道理밖에 없었다. 그러나 長久한 期間 擔當職員들의 不斷한 精誠어린 숨은 努力의 結果로서 이제 겨우 그 一部分이기는 하나 西洋書(定刊物除外)의 書架目錄의 復舊와 이를 根據로 한 點檢事業의 進展을 보아 1964年末까지에는 西洋書에 對한 藏書實態를 把握하게 되었다.

Ⅴ 圖書館現況

1. 施設現況
2. 圖書館資料의 構成
3. 圖書館資料의 蒐集狀況
4. 圖書館利用統計
5. 職員現況

1. 시 설 현

구분 / 기관별	열람							
	학생열람실		참 고 실		교수열람실		기타열람실	
	평 수	좌석수	평 수	좌석수	평 수	좌석수	평 수	좌석수
계	**1,139,935**	**2,123**	**295**	**323**	**57.03**	**52**	**228.70**	**434**
중앙도서관	157.20	392	17.20	12	12.40	18	17.20	32
대 학 원	—	—	—	—	—	—	—	—
행정대학원	26.50	18	30.30	27	—	—	—	—
보건대학원	—	—	—	—	—	—	—	—
사법대학원	150.00	250	30.00	20	15.00	5	5.00	10
교육대학원	—	—	—	—	—	—	—	—
공 대	20.00	48	10.00	12	—	—	50.00	88
농 대	60.00	120	64.00	86	—	—	16.50	4
문 리 대	43.40	50	—	—	8.80	6	—	—
미 대	24.50	36	—	—	—	—	—	—
법 대	150.00	250	30.00	20	—	5	—	10
사 대	168.00	360	52.50	72	—	—	54.00	50
상 대	159.00	243	20.00	32	—	—	40.00	120
약 대	46.71	72	—	—	15.33	10	—	—
음 대	15.00	40	15.00	14	—	—	32.00	120
의 대	96.00	192	26.00	28	—	—	14.00	—
치 대	23,625	52	—	—	—	—	—	—
병 원	—	—	—	—	5.50	8	—	—

황 표

(64. 10. 31 현재)

실 계		서고	사무실	제본실	기타	총계	건물의 독립 또는 병치별		비고
평 수	좌석수						독립	병치	
1,720,665	2,932	1,473,475	348.80	98.00	1,582.40	5,223.34			
204.00	454	695.50	148.80	20.00	323.00	1,187.30	○		
—	—	—	—	—	—	—			
56.80	45	14.30	3.40	—	—	74.50		○	
—	—	—	—	—	—	—			
200.00	285	110.00	40.00	30.00	—	380.00		○	
—	—	—	—	—	—	—			
80.00	148	45.00	10.00	—	—	135.00		○	
140.50	210	59.00	19.80	—	1.70	221.00	○		
52.20	56	8.80	13.30	—	4.40	78.70		○	
24.50	36	12.20	—	—	—	36.70		○	
180.00	285	110.00	40.00	30.00	305.80	665.80	○		
274.50	482	157.50	41.50	18.00	451.00	942.50	○		
319.00	395	107.00	20.00	—	472.00	818.00	○		
62.04	82	—	—	—	—	62.04		○	
62.00	174	15.00	—	—	—	77.00		○	
136.00	220	55.10	2.50	—	24.50	218.10			
23,625	52	28,875	—	—	—	52.50		○	
5.50	8	55.20	9.50	—	—	70.20		○	

2. (가) 장 서

기관별 \ 유별 / 동서별	합계	총기		철학	
		동서	서서	동서	서서
계	**807,470**	**1,720**	**1,537**	**1,203**	**1,357**
중앙도서관	**618,074**	—	—	—	—
대학원	**1,068**	121	2	91	12
행정대학원	**10,983**	146	269	17	193
보건대학원	**58**	—	—	—	4
사법대학원	**3,896**	24	22	20	6
교육대학원	**54**	—	8	—	2
공대	**22,678**	—	47	71	7
농대	**27,961**	310	369	208	28
문리대	**15,836**	49	96	13	199
미대	**946**	—	—	—	—
법대	**16,271**	290	192	306	133
사대	**17,094**	419	250	297	633
상대	**18,342**	331	277	180	125
약대	**2,799**	—	—	—	—
음대	**2,030**	30	—	—	—
의대	**24,259**	—	—	—	—
치대	**4,447**	—	51	—	15
병원	**20,674**	—	—	—	—

일 람 표 (1)

(64. 10. 31 현재)

종교		사회과학		언어학		자연과학	
동서	서서	동서	서서	동서	서서	동서	서서
370	**284**	**20,697**	**16,280**	**1,132**	**1,206**	**10,259**	**34,586**
—	—	—	—	—	—	—	—
2	—	169	8	129	3	48	11
1	17	2,257	5.267	31	48	40	117
—	—	—	6	—	2	—	43
—	2	2,310	163	19	2	13	—
—	—	—	7	—	5	—	7
—	2	35	69	35	3	3,137	5,068
130	1	1,935	704	288	131	2,617	3,499
5	73	146	466	15	80	52	342
—	—	—	—	—	—	—	—
136	95	7,310	3,156	233	136	77	14
87	94	1,269	1,855	251	763	501	2,666
9	—	5,266	4,554	131	9	82	162
—	—	—	—	—	—	—	—
—	—	—	—	—	—	—	—
—	—	—	—	—	—	3,692	20,567
—	—	—	25	—	24	—	2,090
—	—	—	—	—	—	—	—

2. (가) 장 서

유별 / 동서별 / 기관별	공예학		미술		문학	
	동서	서서	동서	서서	동서	서서
계	**9,604**	**14,821**	**652**	**2,593**	**4,021**	**3,810**
중앙도서관	—	—	—	—	—	—
대학원	50	5	89	3	55	1
행정대학원	343	1,103	3	39	6	56
보건대학원	—	1	—	—	—	1
사법대학원	26	—	6	—	4	19
교육대학원	—	4	—	—	—	11
공대	4,588	7,791	4	259	2	34
농대	3,517	4,977	125	48	943	152
문리대	50	28	40	21	101	1,139
미대	—	—	—	—	—	—
법대	154	27	84	47	1,464	200
사대	357	809	212	176	810	1,751
상대	519	76	89	—	636	389
약대	—	—	—	—	—	—
음대	—	—	—	2,000	—	—
외대	—	—	—	—	—	—
치대	—	—	—	—	—	57
병원	—	—	—	—	—	—

일 람 표 (2)

(64. 10. 31 현재)

역사		소계		미정리도서		계	
동서	서서	동서	서서	동서	서서	동서	서서
5,229	**2,169**	**502,721**	**232,067**	**26,861**	**21,402**	**531,004**	**276,466**
—	—	447,834	153,424	10,193	6,623	**458,027**	**160,047**
262	7	1,016	52	—	—	**1,016**	**52**
122	366	2,966	7,475	516	26	**3,482**	**7,501**
—	1	—	58	—	—	—	**58**
63	14	2,485	228	—	1,183	**2,485**	**1,411**
—	10	—	54	—	—	—	**54**
6	20	7,878	13,300	1,500	—	**9,378**	**13,300**
1,027	109	11,100	10,018	4,023	2,820	**15,123**	**12,838**
48	173	519	2,617	2,700	10,000	**3,219**	**12,617**
—	—	—	—	—	—	**365**	**581**
1,048	278	11,102	4,278	891	—	**11,993**	**4,278**
2,033	961	6,236	9,958	200	700	**6,436**	**10,658**
620	199	7,863	5,791	4,688	—	**12,551**	**5,791**
—	—	—	—	—	—	**1,057**	**1,742**
—	—	30	2,000	—	—	**30**	**2,000**
—	—	3,692	20,567	—	—	**3,692**	**20,567**
—	31	—	2,247	2,150	50	**2,150**	**2,297**
—	—	—	—	—	—	—	**20,674**

2. (나) 비도서 자료일람표

(64. 10. 31 현재)

종류별 / 기관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지도	녹음테프	모형	투영기	복사기	기타			비고
									영사기	환등기	라디오	
계	**52**	**3,501**	**916**	**2**	**950**	**—**	**1**	**2**	**12**	**15**	**11**	
중앙도서관	52	—	—	—	—	—	—	1	—	1	—	
대학원	—	—	—	—	—	—	—	—	—	—	—	
행정대학원	—	—	—	—	1	—	—	—	1	1	1	
보건대학원	—	—	—	—	—	—	—	—	—	—	—	
사법대학원	—	—	—	—	2	—	—	—	—	—	1	
교육대학원	—	—	—	—	—	—	—	—	—	—	—	
공대	—	—	—	—	—	—	—	—	—	—	—	
농대	—	—	—	—	—	—	—	—	—	—	1	
문리대	—	—	1	—	102	—	—	—	3	4	1	
미대	—	3,000	50	—	5	—	—	—	2	4	2	
법대	—	—	—	2	—	—	—	—	—	—	1	
사대	—	500	50	—	200	—	—	—	4	4	1	
상대	—	—	—	—	—	—	—	—	—	—	—	
약대	—	1	1	—	—	—	—	—	1	1	1	
음대	—	—	814	—	200	—	1	—	1	—	2	
의대	—	—	—	—	440	—	—	1	—	—	—	
치대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3. (가) 도 서 교 환 현 황

(1664. 10. 31 현재)

구분 / 기관별	1963 수령								1963 발송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불국	기타	계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불국	기타	계
계	1,605	294	26	113	119	4	19	2,180	258	435	6	72	67	—	65	903
중앙도서관	147	212	5	111	103	4	3	585	138	328	3	61	65	—	35	630
대학원	—	—	—	—	—	—	—	—	—	—	—	—	—	—	—	—
행정대학원	13	—	—	—	—	—	—	13	24	26	—	9	—	—	23	82
보건대학원	—	—	—	—	—	—	—	—	—	—	—	—	—	—	—	—
사법대학원	—	—	—	—	—	—	—	—	—	—	—	—	—	—	—	—
교육대학원	—	—	—	—	—	—	—	—	—	—	—	—	—	—	—	—
공대	—	—	—	—	—	—	—	—	—	—	—	—	—	—	—	—
농대	1,287	56	—	—	4	—	7	1,354	65	61	—	—	—	—	1	127
문리대	75	5	10	—	5	—	3	98	10	1	—	—	—	—	—	11
미대	—	—	—	—	—	—	—	—	—	—	—	—	—	—	—	—
법대	—	—	—	—	—	—	—	—	—	—	—	—	—	—	—	—
사대	75	5	10	—	5	—	3	98	10	1	—	—	—	—	—	11
상대	8	16	1	2	2	—	3	32	11	18	3	2	2	—	6	42
약대	—	—	—	—	—	—	—	—	—	—	—	—	—	—	—	—
울대	—	—	—	—	—	—	—	—	—	—	—	—	—	—	—	—
의대	—	—	—	—	—	—	—	—	—	—	—	—	—	—	—	—
치대	—	—	—	—	—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구분 / 기관별	1964 수령								1964 발송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불국	기타	계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불국	기타	계
계	2,001	297	19	140	65	2	151	2,675	194	172	4	52	4	—	41	467
중앙도서관	173	207	5	138	57	2	142	724	77	58	—	41	2	—	11	189
대학원	—	—	—	—	—	—	—	—	—	—	—	—	—	—	—	—
행정대학원	39	—	—	—	—	—	—	39	24	27	—	9	—	—	22	82
보건대학원	—	—	—	—	—	—	—	—	—	—	—	—	—	—	—	—
사법대학원	—	—	—	—	—	—	—	—	—	—	—	—	—	—	—	—
교육대학원	—	—	—	—	—	—	—	—	—	—	—	—	—	—	—	—
공대	1,442	—	—	—	—	—	—	1,442	—	—	—	—	—	—	—	—
농대	174	52	1	—	—	—	4	231	57	61	—	—	—	—	1	119
문리대	80	7	6	—	3	—	—	96	10	—	—	—	—	—	—	10
미대	—	—	—	—	—	—	—	—	—	—	—	—	—	—	—	—
법대	—	—	—	—	—	—	—	—	—	—	—	—	—	—	—	—
사대	80	7	6	—	3	—	—	96	10	—	—	—	—	—	—	10
상대	13	24	1	2	2	—	5	47	16	26	4	2	2	—	7	57
약대	—	—	—	—	—	—	—	—	—	—	—	—	—	—	—	—
울대	—	—	—	—	—	—	—	—	—	—	—	—	—	—	—	—
의대	—	—	—	—	—	—	—	—	—	—	—	—	—	—	—	—
치대	—	—	—	—	—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구분 / 기관별	계 수령								계 발송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불국	기타	계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불국	기타	계
계	3,606	591	45	253	184	6	170	4,855	452	607	10	124	71	—	106	1,370
중앙도서관	320	419	10	249	160	6	145	1,309	215	386	3	102	67	—	46	819
대학원	—	—	—	—	—	—	—	—	—	—	—	—	—	—	—	—
행정대학원	52	—	—	—	—	—	—	52	48	53	—	18	—	—	45	164
보건대학원	—	—	—	—	—	—	—	—	—	—	—	—	—	—	—	—
사법대학원	—	—	—	—	—	—	—	—	—	—	—	—	—	—	—	—
교육대학원	—	—	—	—	—	—	—	—	—	—	—	—	—	—	—	—
공대	1,442	—	—	—	—	—	—	1,442	—	—	—	—	—	—	—	—
농대	1,461	108	1	—	4	—	11	1,585	122	122	—	—	—	—	2	246
문리대	155	12	16	—	8	—	3	194	20	1	—	—	—	—	—	21
미대	—	—	—	—	—	—	—	—	—	—	—	—	—	—	—	—
법대	—	—	—	—	—	—	—	—	—	—	—	—	—	—	—	—
사대	155	12	16	—	8	—	3	194	20	1	—	—	—	—	—	21
상대	21	40	2	4	4	—	8	79	27	44	7	4	4	—	13	99
약대	—	—	—	—	—	—	—	—	—	—	—	—	—	—	—	—
울대	—	—	—	—	—	—	—	—	—	—	—	—	—	—	—	—
의대	—	—	—	—	—	—	—	—	—	—	—	—	—	—	—	—
치대	—	—	—	—	—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4. 도 서 관

기관별 \ 월별	1963 11			12			1964 1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계	**364**	**50,007**	**31,314**	**344**	**45,200**	**30,369**	**321**	**25,412**	**12,903**
중앙도서관	25	159,108	13,082	27	13,044	13,070	19	5,485	6,816
대학원	25	375	612	26	376	675	23	236	357
행정대학원	—	—	—	—	—	—	—	—	—
보건대학원	—	—	—	—	—	—	—	—	—
사법대학원	30	10	7	31	15	10	30	10	8
교육대학원	—	—	—	—	—	—	—	—	—
공대	25	3,000	4,503	23	3,450	5,775	—	—	—
농대	26	710	1,359	25	742	1,110	24	168	303
문리대	24	30	58	20	50	89	22	30	66
미대	—	—	—	—	—	—	27	50	66
법대	30	8,813	1,028	31	11,903	765	30	7,997	819
사대	25	8,769	4,659	25	4,447	3,201	23	5,131	2,046
상대	26	6,970	684	14	5,592	269	23	4,459	389
약대	26	—	—	25	—	—	24	—	—
음대	25	424	424	25	70	70	26	77	77
의대	25	3,514	3,819	26	3,981	4,398	24	1,319	1,553
치대	26	1,053	666	21	1,121	543	—	—	—
병원	26	421	413	25	409	394	26	450	403

이 용 통 계 표

(1964. 10. 31 월별)

2			3`			4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326	**26,905**	**11,465**	**397**	**43,749**	**25,265**	**370**	**46,500**	**32,568**
26	6,521	6,661	30	16,913	10,045	29	21,861	14,604
21	188	144	22	362	570	21	465	675
—	—	—	—	—	—	—	—	—
—	—	—	—	—	—	—	—	—
28	20	15	31	15	10	30	10	15
—	—	—	—	—	—	—	—	—
—	—	—	26	3,120	4,835	26	3,900	5,691
24	321	507	26	816	1,067	26	1,392	2,191
23	40	72	25	60	123	25	65	105
27	72	72	26	94	100	26	100	130
28	—	—	31	7,802	601	30	6,991	1,340
25	9,600	1,415	26	2,481	3,239	26	6,342	3,171
26	8,033	782	26	8,922	1,111	3	928	100
25	—	—	26	—	—	25	—	—
—	—	—	26	520	520	26	1,235	1,306
25	1,178	1,221	24	1,161	1,842	25	1,867	2,013
25	512	203	26	978	745	26	829	794
23	420	373	26	505	457	26	515	433

4. 도 서 관

기관별 \ 월별	5			6			7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계	**367**	**47,776**	**31,313**	**220**	**11,144**	**3,993**	**102**	**1,127**	**3,391**
중앙도서관	29	20,321	12,224	3	1,781	2,192	1	316	2,395
대학원	23	495	559	22	103	120	23	181	223
행정대학원	—	—	—	—	—	—	—	—	—
보건대학원	—	—	—	—	—	—	—	—	—
사법대학원	31	17	25	30	10	10	—	—	—
교육대학원	—	—	—	—	—	—	—	—	—
공대	26	3,120	4,776	—	—	—	—	—	—
농대	25	785	1,315	26	312	424	26	226	371
문리대	25	80	119	10	50	87	—	10	50
미대	26	65	75	26	50	70	—	—	—
법대	31	11,108	1,111	30	7,896	115	—	—	—
사대	26	5,884	4,613	—	—	—	—	—	—
상대	—	—	—	—	—	—	—	—	—
약대	24	—	—	26	—	—	27	—	—
음대	25	1,017	1,017	—	—	—	—	—	—
의대	25	3,238	4,191	8	371	498	—	—	—
치대	26	1,274	929	14	102	49	—	—	—
병원	25	372	359	25	469	428	25	394	352

이 용 통 계 표

(1964. 10. 31 현재)

8			9			10			계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개관일수	이용자수	열람책수
290	**52,491**	**22,175**	**401**	**52,841**	**34,778**	**367**	**67,687**	**34,046**	**3,869**	**470,839**	**273,580**
30	13,991	8,811	29	17,808	13,263	28	15,116	11,159	**276**	**149,075**	**114,322**
22	413	406	22	467	445	20	467	337	**270**	**4,128**	**5,123**
—	—	—	—	—	—	—	—	—	—	—	—
—	—	—	—	—	—	—	—	—	—	—	—
31	15	8	30	10	15	31	10	17	**333**	**142**	**140**
—	—	—	—	—	—	—	—	—	—	—	—
12	1,440	2,890	25	3,000	4,652	22	3,720	6,134	**185**	**24,750**	**39,256**
25	285	492	26	719	1,252	23	652	1,124	**302**	**7,128**	**11,515**
—	27	68	26	40	132	21	85	150	**221**	**567**	**1,119**
—	—	—	26	66	66	27	119	125	**211**	**616**	**704**
31	7,500	991	30	12,761	1,524	31	13,150	1,472	**333**	**95,921**	**9,766**
13	11,232	2,029	26	1,250	3,811	22	16,842	3,045	**237**	**71,978**	**31,229**
21	11,911	733	27	8,780	1,302	22	8,280	805	**188**	**63,875**	**6,175**
25	—	—	26	—	—	23	—	—	**302**	—	—
13	515	535	26	974	974	27	739	739	**219**	**5,571**	**5,662**
21	4,291	4,572	30	5,328	5,974	24	6,183	7,591	**257**	**32,431**	**37,672**
21	529	338	26	1,127	906	23	1,857	960	**234**	**938**	**6,133**
25	342	302	26	511	462	23	467	388	**301**	**5,275**	**4,764**

5. 직 원 현 황

(1964. 10. 31 현재)

직종별 / 기관별	교직			사서직			비사서직			임시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10**	—	**10**	**18**	**7**	**25**	**17**	**13**	**30**	**11**	**5**	**16**	**54**	**25**	**79**
중앙도서관	1	—	—	9	5	**14**	12	2	**14**	7	1	8	29	8	**36**
대학원	—	—	—	—	—	—	—	—	—	—	—	—	—	—	—
행정대학원	1	—	**1**	1	1	**2**	—	1	**1**	—	—	—	2	2	**4**
보건대학원	—	—	—	—	—	—	—	—	—	—	—	—	—	—	—
사법대학원	—	—	—	—	—	—	—	—	—	1	—	**1**	1	—	**1**
교육대학원	—	—	—	—	—	—	—	—	—	—	—	—	—	—	—
공대	1	—	**1**	1	—	**1**	—	1	**1**	—	1	**1**	2	2	**4**
농대	1	—	**1**	1	—	**1**	1	2	**3**	2	1	**3**	5	3	**8**
문리대	2	—	**2**	—	—	—	—	1	**1**	—	—	—	2	1	**3**
미대	1	—	**1**	1	—	**1**	—	—	—	—	—	—	—	—	—
법대	—	—	—	1	—	**1**	1	2	**3**	—	—	—	2	2	**4**
사대	1	—	**1**	1	1	**2**	—	1	**1**	1	—	**1**	3	2	**5**
상대	—	—	—	1	—	**1**	1	—	**1**	—	1	**1**	2	1	**3**
약대	—	—	—	—	—	—	—	1	**1**	—	—	—	—	1	**1**
음대	—	—	—	—	—	—	—	1	**1**	—	—	—	—	1	**1**
의대	1	—	**1**	—	—	—	2	1	**3**	—	1	**1**	3	2	**5**
치대	1	—	**1**	1	—	**1**	—	—	—	—	—	—	2	—	**2**
병원	—	—	—	1	—	**1**	—	—	—	—	—	—	1	—	**1**

Ⅵ 各 大學圖書館 案內

1. 行政大學院 圖書館 案內

가. 圖書館設立 및 藏書

本大學院은 行政에 關한 專門的 學術研究調査 및 諮問活動의 中心機關으로서의 役割을 하기 爲하여 1958年 美國 I.C.A. 基金援助 및 Minnesota 大學의 技術支援에 依하여 圖書의 選定 發注 收書 整理等 圖書館 開館準備를 完了하고 1959年 4月 1日 本大學院의 開院과 더불어 開館하였으며 藏書는 主로 行政學系統을 中心으로한 社會科學系 西洋書(7,500冊) 政府刊行物 및 社會科學 各 分野의 定期刊行物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東洋書와 本大學院 碩士學位論文을 合하여 그 藏書數가 約 11,000冊에 達한다.

나. 圖書室의 性格

本圖書室은 下記資料를 蒐集하는데 置重하는 特殊 圖書室이다.

A. 敎科書, 定期刊行物 및 參考書籍을 包含하는 行政學에 關한 理論 研究調査 및 實際를 研究하는데 必要한 資料

B. 行政研究와 關聯되는 社會科學에 關한 研究資料

C. 大韓民國과 外國政府의 文書 및 其他 刊行物

다. 圖書室 使用方法

A. 圖書館의 利用은 本大學院의 敎職員, 研究員 在學生으로서 本圖書館에 依하여 發行된 閱覽證所持者

B. 閱覽室에 備置된 參考圖書 및 定期刊行物은 圖書館運營上 支障이 없는限 自由롭게 閱覽할수있으나 圖書室外로 貸出할 수 없다.

C. 其他資料는 係員의 承認下에 다음과 같이 貸出할 수 있다.

① 敎職員—2週間을 期限으로 6冊 하루 期限으로 3冊 但 行政大學院 建物內에 備置한다는 條件下에 3週間 期限으로 6冊을 더 貸出할 수 있다.

② 研究員 및 在學生—1週日期限으로 3冊 하루 期限으로 2冊을 빌릴 수

있다.

D. 讀者는 貸出한 資料가 期限이되면 일단 返納한 後 他人의 要請이 없는 境遇에는 새로 期限을 定하여 貸出할 수 있다.

E. 讀者는 圖書室職員의 許諾없이 書庫에 들어갈수없다.

F. 懲戒處分과 病故 및 其他 理由로서 本大學院의 關係가 停止된 敎職員 硏究員 및 學生은 本圖書室의 使用이 停止되며 以前에 貸與된 모든 資料를 返還하여야 한다.

G. 圖書를 紛失 또는 損傷하는 境遇에는 그에 相當한 辨償을 하여야한다.

라. 圖書館 카—드 使用方法

A. 本圖書室은 다음과 같은 種類의 카—드 目錄을 備置하고 있다.

① 著者 및 書名카—드

이 카—드는 書籍의 著者名과 題目을 아는 境遇에만 使用할 수 있고 排列은 Alphabet 順으로 되어 있다.

② 分類別 카—드

이 카—드는 Alphabet 順에 依하여 排列되어 있지 않고 學問의 分野別 卽 分類別番號順으로 排列되어 있다.

上記 分類番號는 Dewey 十進分類表에 依據한 것이다.

B. 東洋書의 境遇도 上記와 같은 카—드 目錄을 備置하고 있으나 排列은 "가, 나, 다" 順으로 排列하였다.

C. 日書의 境遇에 讀者들의 便宜를 爲하여 原音을 한글로 表示하여 "가, 나, 다" 順으로 排列하였다.

"例" 가네꼬 히로시

著者 : 金子 弘

게이자이 다이세이 노 몬다이

書名 : 經濟體制の 問題

D. 圖書를 請求할時는 카—드의 上左側에 있는 請求番號를 圖書請求用紙에 轉記하여 係員에게 提示하면 된다.

마. 圖書館 開館時間

閱覽時間 平日 9 : 00~21 : 30

冬 夏期放學　9:00~17:00

土 曜 日　9:00~13:00

閉館時間 土曜日 下午 및 公休日

閱覽座席數 參考閱覽室 27席

閱 覽 室 18席

2. 文理科大學 圖書館 案內

本大學 圖書館은 1956年 10月 圖書室로서 發足하였으나 大學圖書館의 本來의 使命에 應하고저 1962年 12月에 本館 3層에 자리를 옮겨 그 名稱을 圖書館이라고 하고 于先 圖書整理事業에 着手하였다.

1963年 1月에 本大學 視聽覺센터가 竣工되자 곧 그곳으로 移轉하고 圖書館으로서의 正常的인 業務를 開始하고 第1次計劃으로서 古圖書는 中央圖書館에 移管하였고 各學科 研究室에 備置되어 있는 圖書를 年次的으로 調査 整理에 着手하였다.

아직 圖書館으로서의 가장 重要한 技能인 貸出事務를 公開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現在 教職員 大學院生에 限하고 一般 學生들에게는 教授를 通한 貸出만 許容되어 있다.

앞으로 2個年 計劃만 끝나면 名實 共히 圖書館으로서의 技能을 할 수 있게 된다. 本 圖書館은 中央圖書館과 隣接하고 있는 關係로 여러가지 便利한 點이 많으므로 小規模로 運營되어가고 있으며 現在로는 放置되어 있는 圖書를 整理하는 過程에 있으나 一旦 軌道에 오르게되면 本大學의 特殊한 性格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意圖下에 움직이고 있다. 한가지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視聽覺教育院과 併設되어 있는 有利한 點을 考慮하여 比較的 現代的인 設備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現在 가장 緊急한 것은 亦是 財政的인 뒷바침이며 大學의 特徵을 具顯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圖書整理 事業

現在 本大學의 各學科에 整理되지 않은 狀態로 數年間 備置 되어온 圖書를 1964年 7月부터 再調査 整理에 着手하여 1964年 9月 30日 現在로 約

2,400冊을 整理完了하였다.

3. 師範大學 圖書館 案內

師範大學 圖書館은 1945年 京城師範學校와 京城女子師範學校로부터 圖書 8千餘卷을 引受함으로써 發足하였다.

1·4後退 때에 釜山에서 圖書課로 始作하여 戰禍입은 殘存圖書 約 3千卷 程度 남은 책에다 운크라와 F.O.A. 援助로 5千餘卷을 補充하여 겨우 面目을 세웠으며 1961年 7月 10日 現位置로 移轉하여 完全한 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갖이게 되었다.

施設~가. 學生閱覽室　1室(168坪)—360席
나. 參考圖書室　1室(25.5坪)—72席
다. 雜誌 및 新聞室 1室(54坪)—50席
라. 資 料 室　1室(29.5坪)
마. 製 本 室　1室(18坪)
바. 書　　庫　上,下層(157.5坪)
사. 事務室 카운터및 其他

藏書現況—藏書數는 10萬卷을 目標로 蒐集中에 있으나 現在 東洋書 6,346卷 西洋書 10,658卷 合計 17,094卷이 整理保管되어 있으며 繼續하여 各界로부터 寄贈받으며 또한 購入하여 資料의 充實을 期하고 있다.

資料의 整理—資料의 分類는 D.D.C. 分類法에 依하여 分類되고 있으며 韓國分野에 關한 展開는 따로 하고 있다.

目錄은 美國圖書館協會 및 美國國會圖書館 目錄規程을 使用하고 東書 洋書를 莫論하고 全部著書 書名 主題 및 參照 카—드로 構成된 辭典體 目錄을 作成하고 있다.

資料의 閱覽—圖書 및 其他 圖書館資料의 閱覽은 原則的으로 館內 閱覽으로 하고 있으나 學生은 3日間 敎職員은 1個月間式 館外 貸出을 許容하고 있으며 本圖書館資料 利用은 本大學職員 및 學生에 限하여 卒業生 및 附屬學校 敎師 또는 一般研究家로서 圖書館長의 許可를 얻은 者는 閱覽케하고 있다.

閱覽時間—平日은 上午 8時부터 下午 10時까지이며 日曜日 및 公休日은 上午 9時부터 下午 5時까지 年中無休 閱覽室을 開放하고 있다.

4. 音樂大學 圖書館 案內

가. 施設—視聽覺室 32坪
書　　庫 15坪
參考閱覽室, 事務室 15坪
一般閱覽室 20坪

나. 槪要—本大學圖書는 레코드 錄音테프 樂譜 파이트 書籍等의 特殊圖書로서 一般圖書에 比하여 整理上으로나 利用面에 있어서 많은 時間과 資金을 要함.

A. 視聽覺室—레코드 錄音테프 카피마신 幻燈機 映寫機等의 視聽覺資料로서 閱覽者(學生 敎授)들에게 鞭撻을 圖謀하고 있음.

B. 參考閱覽室—樂譜 音樂關係書籍 參考書籍等으로서 閱覽者에게 利用되고 있음. (個人圖書 및 所持品은 持參치 못함) 閱覽室은 參考閱覽 및 事務室과 兼用하고 있음 (午前 9時~午後 5時)

圖書貸出方法은 圖書의 大部分이 樂譜이므로 現在 外國樂譜는 市中에서 購入하기가 困難한 狀態에 있으며 大槪 1卷程度式 備置되어 있으므로 一般圖書와 달리 取扱되어 樂譜는 寫本用으로만 貸出시킴이 原則으로되어 있음.

다. 一般閱覽室—學生들이 自由로이 所持品을 持參하고 들어 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各自가 自己의 冊을 利用하고 있음 (時間制限이 없음)

라. 圖書整理 狀況

A. 樂譜(Score) 2000卷

B. 書籍(音樂關係東書 및 西書) 500卷

마. 視聽覺 資料 : 레코드 800枚
錄音테프 200枚

全혀 未整理 狀態에 있던 圖書를 위와 같이 整理하여 現在에는 閱覽者(學生, 敎授)들에게 活潑히 愛用시키고 있음.

바. 書庫와 參考 閱覽室의 分離

書庫와 參考閱覽室을 한房에서 兼用하던 것을 좀더 圖書와 完全한 保管을 期하고저 獨立된 書庫와 參考 閱覽室을 分離하였음.

Ⅶ Micro 複寫施設 利用案內

本館에서는 1964年 10月부터 Micro 複寫施設을 本格的으로 稼動함으로써 本館利用者에 對하여 좀더 迅速하고 正確하게 研究資料를 提供하고자 試圖하고 있다. 이에 Micro 寫眞을 利用함으로써 얻는 바 利點을 몇 가지 紹介하고자 한다.

1. 記錄의 保管이 簡便하다

가장 常識的으로 알 수 있는 利益으로는 資料를 縮少하여 保管에 便宜를 가져올 수 있으며 本館의 Micro 複寫機의 縮少率은 $\frac{1}{5}$乃至$\frac{1}{21}$이나 되므로 그 面積比로 본다면 $\frac{1}{25}$乃至 $\frac{1}{441}$로 壓縮할 수 있으므로 保管에 簡便하다.

2. 記錄이 絕對 迅速 正確하다

記錄을 손으로 複寫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正確을 期한다 하더라도 誤字, 脫字等 魚魯의 過誤를 犯하지 않는다고 壯談할수없다. 그러나 이 Micro 寫眞으로 複寫한다면 複寫의 미쓰도 防止되고 複寫에 所要되는 努力과 時間은 姑捨하고 原資料와의 對照나 校正을 위한 勞力과 時間이 全혀 必要치 않다.

3. 記錄을 安全하게 保全할 수 있다

Microfilm은 종이보다도 燃燒性이 弱하며 現像處理나 保管條件을 適切히 한다면 火災나 變質의 憂慮가 적어서 다른 어떤 方法에 依한 것 보다도 壽命이 길고 거의 永久的이며 完全하다.

4. 資料의 規格, 形態, 質을 變化시켜 統一化 시킬 수 있다

各樣各色의 크기나 形態에 資料를 함께 다루기에는 매우 不便하다. 그러나 Micro 寫眞은 縮少撮影 또는 擴大復元을 할 때에 그 크기나 부피를 比較的 自由롭게 調節할수 있으므로 同一規格, 同一形態, 同一質의 것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

以上 몇 가지 利點을 例示한 外에도 Microfilm은 多角度로 利用된다.

다음의 表는 本館의 Micro 複寫施設을 利用함에 있어서의 實費手數料表인바 좀더 施設을 갖추고 그 材料를 廉價로 求得할 수 있게되면 좀더 低廉한 手數料로써 奉仕할수 있게 될것이다.

本館의 Micro 複寫施設의 利用에 對한 奉仕는 閱覽課貸出係(72—9060)에서 擔當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歡迎하고 있다.

문헌복사 수수료표

복사물의 종류 및 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복사물의 종류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표와 같다.

종류 및 판별 \ 구분		기본 요금	초과분 요금
필름 (35 mm)	원판(네가)	5매까지 100원	1매당 5원
	양판(포지)	5매까지 180원	1매당 9원
슬라이드 (35 mm)	흑백	5매까지 150원	1매당 20원
인화지	A4 (국배판) (21×29.7 cm)	5매까지 200원	1매당 25원
	A5 (국판) (14.8×21 cm)	5매까지 200원	1매당 20원
포토팍쓰 (Photofax)	A4 (국배판) (21×29.7 cm)	5매까지 300원	1매당 50원
	A5 (국판) (14.8×21 cm)	5매까치 200원	1매당 30원

그러나 위표의 수수료중 외래인에 데하여는 수수료 전액의 5%를 가산한다.

2. 위표의 수수료중에 포함된 시설감가상각비 및 외래인에 대한 부가수수료는 이를 국고에 납부한다.

3. 필름 보관용기 및 리다트레라는 실비로 제공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복사물 급부신청자에게 사진원판(네가필름)을 급부할수 없다.

가. 복사물이 그 자료의 전책 또는 내용의 대부분을 수록한 경우.

나. 복사물 급부신청의 목적이 상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본관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열람과 제공〉

Ⅷ 中央圖書館 主要日誌

1963年 11月 21日 美國 Alabama大學 法科 敎授 Jay Murphy氏 法律關係 書籍調査次 來館

1964年 1月 28日 美國 Puerto Rico大學 法科 敎授 Helen String女史 來館

1964年 3月 5日 李玖氏 來館

1964年 4月 4日 美國 南Illinois大學 Earl Hauson敎授 來館

1964年 4月 9日 美國 Harvard大學 植物園 Wasson研究官 來館

1964年 7月 29日 日本 東京 法政大學 福室泰三氏 來館

1964年 9月 17日 中國 臺灣 東海大學 蕭繼宗 敎授 來館

1964年 9月 29日 國會圖書館 李喆圭 司書官 및 그 一行 來館

1964年 10月 23日 美國 Attonted Union College의 May L. Pecham敎授 來館

1964年 10月 29日 日本 天理大學 平木 實 研究員 來館

1964年 11月 6日 美國 McGraw-Hill會社 Manager인 Haskell氏 來館

1964年 11月 9日 臺灣國立政治大學校 朱建民 및 張金鑑 두 敎授 來館

1964年 11月 18日 美國 Hawaii大學 Losenberg敎授 申總長任 案內로 來館

編 輯 後 記

◇ 創刊號가 나온지 1年餘만에 다시 제2號가 햇빛을 보게 되었읍니다.

◇ 本號에는 車柱環敎授의 鵝溪遺稿小考를 卷頭에 실렸읍니다. 車敎授의 韓國古典中 文集에 對한 最近 硏究中에서 하나 추려서 小考로 한 것입니다.

◇ 白麟 司書課長의 奎章閣略史는 이미 碩士學位論文으로서 發表된 바 있는 資料의 一部와 아직 發表되지아니한 資料를 실려 韓國圖書館史 硏究의 必須基本資料라고 生覺됩니다.

◇ 이번에는 法科大學圖書館에서 參考圖書解題를 寄稿 하였는바 其他 各 大學圖書館에서도 該當 專門分野의 參考圖書解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各 大學圖書館案內는 寄稿된 것 中에서 추려서 실렸읍니다.

◇ 앞으로도 많은 問題가 提起되어야하고 論評도 실려 보다낳은 館報가 되게 힘쓸것 입니다.

〈非 賣 品〉

1964年 12月 24日 印 刷
1964年 12月 30日 發 行

圖 書 館 報

第 2 卷

編輯人 發行人 金 柱 淑

發 行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印 刷 서 울 大 學 校 出 版 部